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36호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68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1호 산곡7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2호 하천(운연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5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3호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8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0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60호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고·열람 10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01호 도시계획시설(사모지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안) 10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40호 유료도로 신설 공사에 관한 공고 1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4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안) 공고·열람 1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2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27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70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3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75호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76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49

회 람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소방학교) 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06. 07.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인천소방학교 이전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29,964㎡
- 규모: 본관동(주1동), 옥내훈련장(주2동), 수난구조훈련장/구급교육센터(주3동), 소방종합훈련탑(주4동), 관사 및 생활관(주5동), 후생관(주6동), 관리시설(주7동), 경비실(부1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인천소방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계						605,954	29,964			
1	양사면	인화리	산182		임	9,818	5,869	유**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번길 **)	70/ 1485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길 **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길 **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길 **	283/ 1485
2	양사면	인화리	산186	4	임	1,279	1,279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_*	1/2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관로**번길 **	1/2
3	양사면	인화리	산206	1	임	594,857	22,816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68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부터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m^3) 단위단가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415,000원/ m^3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정방법
- 적용시기 : 2021. 7. 1일부터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2021. 7.

인천광역시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1 총괄유출계수(C) 산정

-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유출계수의 평균값을 기초유출계수로 적용하여 총괄유출계수 산정

※ [붙임1] 적용 유출계수

- 총괄유출계수 산정 식 : $C = \sum_{i=1}^m C_i \cdot A_i / \sum_{i=1}^m A_i$

- C : 총괄유출계수
- C_i : i번째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
- A_i : i번째 토지이용도별 총면적
- m : 토지이용도의 수

- 도시개발사업(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외)에 따른 총괄유출계수 산정 시 기초유출계수 항목에 없는 토지이용의 유출계수는 도시계획시설별 가장 유사한 값으로 적용

※ [붙임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 값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가장 유사한 값으로 적용

※ [붙임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 값

2 강우강도(I) 적용

- 유달시간(t) = 유입시간(t_1) + 유하시간(t_2)

- 개발지역의 최종방류구 까지를 유달시간으로 산정
- 유입시간 : 하수도시설기준에서 규정하는 평균값(7분) 적용
- 유하시간 : $t_2 = \frac{L}{V} \times \frac{1}{60}$

· L : 개발지역내 최장 관거연장(m)

· V : 관내 평균유속(1.8m/sec)

-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강우강도식 적용

구 분	확률빈도	강우강도식(mm/hr)	비 고
지선·간선 하수관로	50년 빈도	$I = \frac{1850.1610}{t^{0.6329} + 7.1119}$	

3 빗물유출량(Q) 산정

- 합리식에 의한 유량 산정 : $Q = \frac{1}{360} C \cdot I \cdot A$

- Q : 빗물유출량(m³/sec)
- C : 유출계수
- I : 유달시간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 A : 배수면적(ha)

- 개발사업 전 총괄유출계수(C₁)와 개발사업 후 총괄유출계수(C₂)를 각각 계산하여 증가되는 빗물유출량 산정

- 빗물유출 증가량 : $Q = \frac{1}{360} C_2 \cdot I \cdot A - \frac{1}{360} C_1 \cdot I \cdot A$

4 하수관경(D) 결정

- 관거 단면적의 수심 결정시 원형단면은 만류, 사각형(박스) 단면은 높이의 90%를 적용
- 통수유량 산정시 유속은 하수도시설기준상 이상적 유속의 최대값인 1.8m/s를 적용
- ※ [붙임4] 관경별 통수유량
- 하수관경 결정은 증가되는 빗물유출량을 통수할 수 있는 관경 이상으로 하되, 관경이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정

5 관거연장(L) 측정

- 개발사업 지구에서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하여 최종 방류구인 하천(구거 포함) 또는 해안까지의 하수 관거 연장을 측정하되 m단위 기준으로 일단위 절사

6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는 2013. 10. 14. 최초 고시된 공사비 기준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변경공사비 적용
 - ※ [붙임5]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경이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된 관경이 각 표준단위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해 해당 관경에 대한 공사비 산정
- 관경이 표준단위 공사비에 고시된 최소관경보다 작을 경우 최소관경으로 산정

7 빗물부담금 산정

- 개발사업 전후의 빗물유출량을 산정한 후 증가량 계산
- 증가된 유출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하수관경 결정 후 관거 연장 측정
- 빗물부담금 =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거 연장
(10원 미만 금액 절사)

【붙임1】 적용 유출계수

토 지 이 용		유출계수		토 지 이 용		유출계수	
		범위	적용값			범위	적용값
상업 지역	도심지역	0.70~0.95	0.83	운 동 장		0.20~0.35	0.28
	근린지역	0.50~0.70	0.60	공원, 묘역, 잔디		0.10~0.25	0.18
주거 지역	단독주택	0.30~0.50	0.40	도로	아스팔트	0.70~0.95	0.83
	독립주택단지	0.40~0.60	0.50		콘크리트	0.80~0.95	0.88
	연립주택단지	0.60~0.75	0.68		벽 돌	0.70~0.85	0.78
	교외지역	0.25~0.40	0.33	수 면		1.00	1.00
	아 파 트	0.50~0.70	0.70 ¹⁾	경 작 지		0.10~0.25	0.18
산업 지역	산재지역	0.50~0.80	0.65	미개발지역(공지)		0.10~0.30	0.20
	밀집지역	0.60~0.90	0.75	나 지		0.30~0.40	0.35
상습침수지역		-	0.80	산지	급경사	0.40~0.60	0.50
철 로		0.20~0.40	0.30		완경사	0.20~0.40	0.30

※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유출계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빗물부담금 산정에 한해 범위가 아닌 기준이 되는 특정값이 필요하므로 평균값을 적용값으로 한다. (단, 아파트는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 적용)

주1) 하수도시설기준에서 아파트의 유출계수를 0.50~0.70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불투수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평균값(0.60)을 적용할 경우 연립주택단지의 평균값(0.68)보다 작아 불합리하므로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0.70)으로 적용함. 단 공동주택 유출계수 적용 시 단지 내 근생 및 녹지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부 구분하여 [붙임3]에 따른 각 유출계수를 적용한다.

【붙임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분류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적용값	비고
교통시설	도로	0.83	도로(아스팔트)
	철도	0.3	철로
	항만	0.83	도로(아스팔트)
	공항	0.83	도로(아스팔트)
	주차장	0.83	도로(아스팔트)
	자동차정류장	0.83	도로(아스팔트)
	궤도	0.3	철로
	운하	1.00	수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0.83	도로(아스팔트)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0.83	도로(아스팔트)
공간시설	광장	0.83	도로(아스팔트)
	공원	0.18	공원
	녹지	0.3	산지(완경사)
	유원지	0.18	공원
	공공공지	0.35	나지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0.65	산재지역
	수도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전기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가스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열공급설비	0.65	산재지역
	방송·통신시설	0.65	산재지역
	공동구	0.65	산재지역
	시장	0.60	근린지역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0.65	산재지역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0.35	운동장(최대값)
	운동장	0.28	운동장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적용값	비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0.60	근린지역
	문화시설	0.60	근린지역
	체육시설	0.60	근린지역
	도서관	0.60	근린지역
	연구시설	0.60	근린지역
	사회복지시설	0.60	근린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	0.60	근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0.60	근린지역
방재시설	하천	1.00	수면
	유수지	1.00	수면
	저수지	1.00	수면
	방화설비	0.65	산재지역
	방풍설비	0.30	산지(완경사)
	방수설비	0.65	산재지역
	사방설비	0.50	산지(급경사)
	방조설비	0.20	미개발지역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0.18	묘역
	공동묘지	0.18	묘역
	납골시설	0.18	묘역
	자연장지	0.18	묘역
	장례식장	0.65	산재지역
	도축장	0.65	산재지역
	종합의료시설	0.60	근린지역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0.65	산재지역
	폐기물처리시설	0.65	산재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0.65	산재지역
	폐차장	0.65	산재지역

【붙임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분류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0.40	단독주택
	다중주택	0.50	독립주택단지
	다가구주택	0.50	독립주택단지
	공관	0.40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0.70	아파트
	연립주택	0.68	연립주택단지
	다세대주택	0.68	연립주택단지
	기숙사	0.68	연립주택단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0.60	근린지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0.60	근린지역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0.60	근린지역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0.60	근린지역
	탁구장 및 체육도장	0.60	근린지역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0.60	근린지역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0.60	근린지역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0.60	근린지역
	지역아동센터	0.60	근린지역
	가스배관시설	0.60	근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0.60	근린지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0.60	근린지역
	서점	0.60	근린지역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0.60	근린지역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0.60	근린지역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	0.60	근린지역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0.60	근린지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0.60	근린지역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0.60	근린지역
	단란주점	0.60	근린지역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0.60	근린지역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0.60	근린지역
	고시원	0.60	근린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0.60	근린지역
	집회장	0.60	근린지역
	관람장	0.60	근린지역
	전시장	0.60	근린지역
	동·식물원	0.60	근린지역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0.60	근린지역
	봉안당	0.60	근린지역
판매시설	도매시장	0.60	근린지역
	소매시장	0.60	근린지역
	상점	0.60	근린지역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0.83	도로(아스팔트)
	철도시설	0.30	철로
	공항시설	0.83	도로(아스팔트)
	항만시설	0.83	도로(아스팔트)
의료시설	병원	0.60	근린지역
	격리병원	0.33	교외지역
교육연구시설	학교	0.35	운동장(최대값)
	교육원	0.60	근린지역
	직업훈련소	0.60	근린지역
	학원	0.60	근린지역
	연구소	0.60	근린지역
	도서관	0.60	근린지역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0.60	근린지역
	노인복지시설	0.60	근린지역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0.60	근린지역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0.33	교외지역
	자연권 수련시설	0.33	교외지역
	유스호스텔	0.33	교외지역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0.60	근린지역
	체육관	0.60	근린지역
	운동장	0.28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0.60	근린지역
	일반업무시설	0.60	근린지역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0.60	근린지역
	관광숙박시설	0.33	교외지역
	고시원	0.60	근린지역
	그 밖	0.60	근린지역
위락시설	단란주점	0.60	근린지역
	유흥주점	0.60	근린지역
	유원시설업의 시설	0.60	근린지역
	무도장, 무도학원	0.60	근린지역
	카지노영업소	0.60	근린지역
공장	공장	0.75	밀집지역
창고시설	창고	0.65	산재지역
	하역장	0.65	산재지역
	물류터미널	0.65	산재지역
	집배송 시설	0.65	산재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0.83	도로(아스팔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0.83	도로(아스팔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0.65	산재지역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0.65	산재지역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0.65	산재지역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0.65	산재지역
	도료류 판매소	0.65	산재지역
	도시가스 제조시설	0.65	산재지역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화약류 저장소	0.65	산재지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0.83	도료(아스팔트)
	세차장	0.83	도료(아스팔트)
	폐차장	0.83	도료(아스팔트)
	검사장	0.83	도료(아스팔트)
	매매장	0.83	도료(아스팔트)
	정비공장	0.83	도료(아스팔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0.83	도료(아스팔트)
	차고 및 주기장	0.83	도료(아스팔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0.33	교외지역
	가축시설	0.33	교외지역
	도축장	0.33	교외지역
	도계장	0.33	교외지역
	작물 재배사	0.33	교외지역
	종묘배양시설	0.33	교외지역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0.33	교외지역
	식물과 관련된 시설	0.33	교외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0.65	산재지역
	고물상	0.65	산재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0.65	산재지역
교정 및 군사 시설	교정시설	0.33	교외지역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등	0.33	교외지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0.33	교외지역
	국방·군사시설	0.33	교외지역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0.65	산재지역
	전신전화국	0.65	산재지역
	촬영소	0.65	산재지역
	통신용 시설	0.65	산재지역
	그 밖	0.65	산재지역
발전시설	발전시설	0.65	산재지역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0.18	묘역
	봉안당	0.18	묘역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18	묘역

용도별	건축물	적용값	비고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0.33	교외지역
	야외극장	0.33	교외지역
	어린이회관	0.60	근린지역
	관망탑	0.60	근린지역
	휴게소	0.83	도로(아스팔트)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18	공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0.65	산재지역

【붙임4】 관경별 통수유량

1) 원형단면

관경(mm)	단면적(m ²)	유속(m/s)	유량(m ³ /s)
250	0.049	1.8	0.088
300	0.071	1.8	0.127
350	0.096	1.8	0.173
400	0.126	1.8	0.226
450	0.159	1.8	0.286
500	0.196	1.8	0.353
600	0.283	1.8	0.509
700	0.385	1.8	0.693
800	0.503	1.8	0.905
900	0.636	1.8	1.145
1000	0.785	1.8	1.414
1100	0.950	1.8	1.711
1200	1.131	1.8	2.036
1350	1.431	1.8	2.576

2) 직사각형 단면(유효통수능 90% 적용)

H(m)	W(m)	단면적(m ²)	유효단면적(m ²)	유속(m/s)	유량(m ³ /s)
1.5	1.5	2.25	2.03	1.8	3.645
1.5	1.8	2.70	2.43	1.8	4.374
1.8	1.8	3.24	2.92	1.8	5.249
1.5	2.0	3.00	2.70	1.8	4.860
2.0	2.0	4.00	3.60	1.8	6.480
1.5	2.5	3.75	3.38	1.8	6.075
2.0	2.5	5.00	4.50	1.8	8.100
2.5	2.5	6.25	5.63	1.8	10.125
1.5	3.0	4.50	4.05	1.8	7.290
2.0	3.0	6.00	5.40	1.8	9.720
2.5	3.0	7.50	6.75	1.8	12.150
3.0	3.0	9.00	8.10	1.8	14.580

【붙임5】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1) 원형단면(관중 흡관, 토피 2.0m 기준)

관경(mm)	토사구간(원/m)	포장구간(원/m)
250	296,710	460,360
300	334,680	504,450
350	365,250	541,120
400	386,430	568,410
450	414,290	602,390
500	452,150	646,350
600	544,180	750,600
700	666,510	885,150
800	797,480	1,028,350
900	897,630	1,140,720
1000	1,076,620	1,331,970
1100	1,184,060	1,451,570
1200	1,403,680	1,683,430
1350	1,724,120	2,022,210

2) 직사각형 단면(1련, 토피 0.7m 적용)

구 분	토사구간(원/m)	포장구간(원/m)
H1.5×W1.5	2,774,260	2,892,090
H1.5×W1.8	3,085,850	3,203,680
H1.8×W1.8	3,636,830	3,754,660
H1.5×W2.0	3,617,830	3,735,650
H2.0×W2.0	4,089,010	4,206,840
H1.5×W2.5	4,636,190	4,754,010
H2.0×W2.5	5,228,970	5,346,790
H2.5×W2.5	5,586,150	5,703,980
H1.5×W3.0	5,510,160	5,627,980
H2.0×W3.0	6,224,530	6,342,360
H2.5×W3.0	6,745,110	6,862,930
H3.0×W3.0	7,140,300	7,258,1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9차), 실시계획(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032-560-574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7.

인천광역시장

I.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비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906,3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정5거리 일원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 원도심 재생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청라국제도시, 영종신도시, 가정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BRT 등 광역교통 체계의 변화를 반영 연계하여 가정5거리 주변 교통난 해소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인천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08. 28. ~ 2022. 06. 30.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906,349	100.0	906,349	100.0		
주 거 용 지	89,314	9.9	89,314	9.9		
공 동 주 택 용 지	70,388	7.8	70,388	7.8		
준주거시설용지	18,926	2.1	18,926	2.1		
상 업 용 지	380,564	42.0	382,642	42.2	증) 2,078	
중 심 상 업 용 지	80,550	8.9	80,550	8.9		
일 반 상 업 용 지	300,014	33.1	302,092	33.3	증) 2,078	
주 상 복 합 용 지	221,650	24.5	221,650	24.5		
상 업 업 무 용 지	51,250	5.7	51,250	5.7		
공 공 업 무 용 지	27,114	3.0	29,192	3.2	증) 2,078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434,246	47.9	434,246	47.7	감) 2,078	
도 로	270,165	29.8	268,087	29.6	감) 2,078	
공 원 · 녹 지	143,509	15.8	143,509	15.8		
근 린 공 원	47,575	5.2	47,575	5.2		2개소
어 린 이 공 원	16,129	1.8	16,129	1.8		3개소
소 공 원	9,881	1.1	9,881	1.1		5개소
문 화 공 원	21,734	2.4	21,734	2.4		3개소
경 관 녹 지	44,036	4.9	44,036	4.9		4개소
완 충 녹 지	4,154	0.5	4,154	0.5		1개소
전 기 공 급 설 비	2,690	0.3	2,690	0.3		1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50	0.0	50	0.0		2개소
주 차 장	6,230	0.7	6,230	0.7		3개소
학 교	1,389	0.2	1,389	0.2		1개소
유 치 원	1,697	0.2	1,697	0.2		1개소
광 장	3,816	0.4	3,816	0.4		2개소
공 공 청 사	4,700	0.5	4,700	0.5		3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2,225	0.2	2,225	0.2		
종 교 용 지	811	0.1	811	0.1		1개소
주 유 소	1,414	0.2	1,414	0.2		1개소

주1) 도로면적은 도로 내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19,835㎡) 제외 면적임(도로 총면적 287,922㎡)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구 분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5	44	9,701	9,528	290,000	287,922		
일반도로	계	35	35	8,799	8,765	283,344	283,344		
	광로	소계	2	2	1,641	1,641	125,744	125,744	
		2 류	2	2	1,641	1,641	125,744	125,744	
	대로	소 계	5	5	2,592	2,592	90,444	90,444	
		1 류	2	2	1,728	1,728	76,604	76,604	
		2 류	-	-	-	-	-	-	
		3 류	3	3	864	864	13,840	13,840	
	중로	소 계	21	21	3,943	3,909	61,423	61,423	
		1 류	9	9	1,365	1,365	27,870	27,870	
		2 류	4	4	919	919	13,705	13,705	
		3 류	8	8	1,659	1,625	19,848	19,848	도로연장 오기정정
	소로	소 계	7	7	623	623	5,733	5,733	
		1 류	1	1	140	140	1,647	1,647	
		2 류	5	5	453	453	3,921	3,921	
		3 류	1	1	30	30	165	165	
보행자 전용	계	10	9	902	763	6,656	4,578		
	중로	2 류	1	-	139	-	2,078	-	
		소 계	9	9	763	763	4,578	4,578	
	소로	1 류	2	2	136	136	1,359	1,359	
		2 류	2	2	182	182	1,468	1,468	
		3 류	5	5	445	445	1,751	1,751	

2)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6,230	
주차장	기정	주1	가정동 산 21-17번지 일원	2,091	
	기정	주2	가정동 341-15번지 일원	1,878	
	기정	주3	가정동 530-4번지 일원	2,261	

3)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3,816	
역전광장	기정	역1	가정동 278-3 일원	1,906	
	기정	역2	가정동 475-1 일원	1,910	

4) 공원(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13개소	95,319	
공 원	기정	문1	가정동 278-30번지 일원	3,519	
	기정	문2	가정동 486-8번지 일원	8,431	
	기정	문3	가정동 489-2번지 일원	9,784	
	기정	근1	가정동 537-19번지 일원	10,805	
	기정	근2	가정동 549번지 일원	36,770	
	기정	어1	가정동 284-9번지 일원	4,573	
	기정	어2	가정동 산22-45번지 일원	2,894	
	기정	소4	가정동 529번지 일원	3,600	
	기정	소1	가정동 5-20번지 일원	482	
	기정	소2	가정동 284-339번지 일원	1,149	
	기정	소3	가정동 541번지 일원	1,161	
	기정	어3	가정동 산 21-6번지 일원	8,662	
	기정	소5	가정동 24번지 일원	3,489	

5) 녹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5개소	48,190	
녹 지	기정	완1	가정동284-123번지 일원	4,154	
	기정	경1	가정동 161-15번지 일원	8,581	
	기정	경2	가정동 산 19-7번지 일원	15,620	
	기정	경3	가정동 118-2번지 일원	17,755	
	기정	경4	가정동 531-1번지 일원	2,080	

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2,690	
전기공급 설비	기정	전1	가정동 106-2번지 일원	2,690	

7)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3,086	
학교	기정	학1	가정동 284-339번지 일원	1,389	
유치원	기정	유2	가정동 산 21-6번지 일원	1,697	

8) 공공청사(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4,700	
공공청사	기정	공1	가정동 290-67대 일원	1,900	가정2동 주민센터
	기정	공2	가정동 490-7대 일원	1,900	가정1동 주민센터
	기정	공3	가정동 488-3 일원	900	지구대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 032-560-574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II.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가정5거리 일원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 원도심 재생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청라국제도시, 영종신도시, 가정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BRT 등 광역교통 체계의 변화를 반영 연계하여 가정5거리 주변 교통난 해소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

구분	면적(㎡)	비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906,349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08. 28. ~ 2022. 06. 30.

6.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1”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14),
인천광역시 서구청(미래기획단, ☎ 032-560-5743)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Ⅲ.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1.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괄표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5	44	9,701	9,528	290,000	287,922		
일반 도로	계	35	35	8,799	8,765	283,344	283,344		
	광로	소계	2	2	1,641	1,641	125,744	125,744	
		2류	2	2	1,641	1,641	125,744	125,744	
	대로	소계	5	5	2,592	2,592	90,444	90,444	
		1류	2	2	1,728	1,728	76,604	76,604	
		2류	-	-	-	-	-	-	
		3류	3	3	864	864	13,840	13,840	
	중로	소계	21	21	3,943	3,909	61,423	61,423	
		1류	9	9	1,365	1,365	27,870	27,870	
		2류	4	4	919	919	13,705	13,705	
		3류	8	8	1,659	1,625	19,848	19,848	도로연장 오기정정
	소로	소계	7	7	623	623	5,733	5,733	
		1류	1	1	140	140	1,647	1,647	
		2류	5	5	453	453	3,921	3,921	
		3류	1	1	30	30	165	165	
	보행자 도로	계	10	9	902	763	6,656	4,578	
중로		2류	1	-	139	-	2,078	-	
소로		소계	9	9	763	763	4,578	4,578	
		1류	2	2	136	136	1,359	1,359	
		2류	2	2	182	182	1,468	1,468	
		3류	5	5	445	445	1,751	1,751	

주1) 도로 연장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내 연장임

주2) 도로 면적은 도로내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 면적(19,835㎡) 포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2	5	37.8 ~104	주간선 도로	8,800 (1,590)	부천시계 (서운동 123-20)	원창동광장31호 (가정동 120-113)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		건교부고시42 7 (86.0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횡단보도교) 중복결정 -문화공원1: 709㎡ -문화공원2: 800㎡ -광장1: 184㎡ -광장2: 184㎡ -소공원2: 76㎡ -소공원3: 74㎡ -경관녹지3:218㎡ •3호근린공원 중복 결정 -면적: 17,755㎡
기정	광로	2	25	50 (35.1~ 150.6)	보조간선 도로	10,450 (51)	용현동 광3-4	가정동 587-1	일반도로		인천고시 2020-178호 (202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결정 -경인선(990㎡) -인천도시철도2호선 (586㎡, 213-215 정거장 지상부 시설) -30호 교통광장 (8,824㎡) -68호 근린공원 (6,379㎡)
기정	대로	1	19	33.5 ~52	주간선 도로	8,018 (1,480)	남측구역계 (가정동 581-1)	백석동경계 (당하동 876-5)	일반도로		건교부고시54 (70.0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호 경관녹지 중복 결정 -면적: 2,080㎡
기정	대로	1	77	35 ~38	보조 간선도로	248	대로1-19 (가정동 553)	대로2-100 (가정동 571)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대로	3	109	25	보조 간선도로	1,107 (54)	가정택지 북측구역계 (가정동105-2)	광로2-5 (가정동203-16)	일반도로		건교부고시20 07-462 (2007.11.6.)	
기정	대로	3	111	25	집산 도로	349 (138)	가정지구 대로3-109 (가정동 127)	중1-488 (가정동 179)	일반도로		'07.11.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186	25-29	보조 간선도로	672	대1-19	중1-27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75-75 (75.05.16)	
기정	중로	1	27	20-32	보조 간선도로	4,565 (215)	광로3-9	대로2-29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70-54 ('70.02.09)	
기정	중로	1	56	20	보조 간선도로	3,847 (71)	대3-186	대1-14	일반도로		건교부고시56 8 ('68.10.23)	
기정	중로	1	321	20	집산 도로	1,451 (144)	중로1-320호선 (가정동 73-36)	대1-19 (가정동 161-1)	일반도로		'07.11.6	
기정	중로	1	488	20	집산 도로	236 (114)	광2-5 (가정동273-5)	가정지구 중로1-321 (가정동 151-1)	일반도로		'15.12.21	
기정	중로	1	662	23	집산 도로	248	광2-5 (가정동 541)	대1-77 (가정동 571)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3	20	집산 도로	40	광2-5 (가정동284-48 3)	중3-662 (가정동 산84-20)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4	20	집산 도로	15	대1-19 (가정동284-25 6)	공동2블럭 (가정동284-108)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5	20	집산 도로	211	광2-5 (가정동 474)	대3-186 (가정동 481-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2	904	18	집산 도로	40	광2-5 (가정동산21-3 2 입)	중3-658 (가정동341-2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2	905	15	집산 도로	519	광2-5 (가정동543-4)	중1-662 (가정동538-2)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도로(황단보도교) 중복결정 -근린공원1: 210㎡ -근린공원2: 64㎡
기정	중로	2	906	15	집산 도로	46	대1-19 (가정동5-53)	중3-664 (가정동5-45)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1	666	20	집산 도로	307	대1-19 (가정동290-1)	중1-488 (가정동178-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2	908	15	집산 도로	314	대1-19 (가정동576-1)	중1-56 (가정동574-1)	일반도로		-	
폐지	중로	2	909	15	특수 도로	139	중1-321 (가정동 163)	중1-666 (가정동 280-7)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 도로 폐지
기정	중로	3	658	12	국지 도로	118	중2-904 (가정동341-29)	북동측구역계 (가정동341-2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59	12	집산 도로	207	광2-5 (가정동산21-3 2)	중2-904 (가정동341-2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3	660	12	국지 도로	350	중3-662 (가정동산84-28)	소2-1 (가정동284-15)	일반도로		인천고시1463 (1989.3.15)	
기정	중로	3	662	12	국지 도로	393	중3-663 (가정동산21-20)	소2-6 (가정동산21-20)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3	12	집산 도로	40	대1-19 (가정동290-71)	봉수초등학교 (가정동290-70)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4	12	국지 도로	177	2-906 (가정동5-45)	루원시티 북측구역계 (가정동5-79)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중로	3	665	12	국지 도로	298	대3-111 (가정동177-8)	루원시티구역계 (가정동441-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666	12	국지 도로	42	중로3-665 (가정동185)	대3-111 (가정동19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278 (140)	중로1-321호선 (가정동 141)	경관녹지1 (가정동산32-2)	일반도로		'07.11.6	
기정	소로	1	1	10	특수 도로	94	중2-909 (가정동163-5)	루원시티 북서측구역계 (가정동441-3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변경	소로	1	1	10	특수 도로	94	공공3 (가정동163-5)	루원시티 북서측구역계 (가정동441-3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중2-909폐지에 따른 시점 변경
기정	소로	1	2	10	특수 도로	42	광2-5 (가정동188)	중로3-665 (가정동185-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3	중3-660 (가정동5-119)	루원시티 북측구역계 (산17-31)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2	8	특수 도로	161	소2-7 (가정동산22-14)	중3-660 (가정동산83-13)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76	중2-906 (가정동산17-30)	중3-660 (가정동284-367)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8	소1-6 (가정동산168-9)	경관녹지1 (가정동산168-7)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21	광2-5 (가정동산21-20)	중3-662 (가정동산21-2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31	소2-1 (가정동산19-2)	경관녹지2 (가정동산19-2)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5	중3-663 (가정동산22-21)	소2-2 (가정동산22-1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1	5	국지 도로	23	중3-664 (가정동5-19)	소공원1 (가정동5-98)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2	3	특수 도로	19	대1-19 (가정동294-26)	중3-662 (가정동294-16)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3	5	특수 도로	42	대1-19 (가정동290-85)	소2-2 (가정동284-34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4	3	특수 도로	303	대1-77 (가정동571)	소공원6 (가정동529-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39	광2-5 (가정동271-2)	중로3-665 (가정동184-3)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42	광2-5 (가정동205-2)	중로3-665 (가정동200)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21	광2-5 (가정동산21-20)	중3-662 (가정동산21-2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31	소2-1 (가정동산9-2)	경관녹지2 (가정동산19-2)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5	중3-663 (가정동산22-21)	소2-2 (가정동산22-14)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1	5	국지 도로	23	중3-664 (가정동5-19)	소공원1 (가정동5-98)	일반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2	3	특수 도로	19	대1-19 (가정동294-26)	중3-662 (가정동294-16)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3	5	특수 도로	42	대1-19 (가정동290-85)	소2-2 (가정동284-348)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기정	소로	3	4	3	특수 도로	303	대1-77 (가정동571)	소공원6 (가정동529-0)	보행자 전용도로		인천고시215 (16.09.19.)	
신설	소로	3	5	6	특수 도로	39	광2-5 (가정동271-2)	중로3-665 (가정동184-3)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6	6	특수 도로	42	광2-5 (가정동205-2)	중로3-665 (가정동200)	보행자 전용도로		-	

주) ()는 전체도로 중 구역내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9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연장 139m, - 폭원 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2) 주차장(변경없음) (생략)

3) 철도(변경없음) (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생략)

2) 학교(변경없음)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생략)

라.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생략)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생략)

바. 공공업무용지

기정						변경						증감 (㎡)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합계		27,114	-	-	27,114	합계		27,114	-	-	29,192	증)2,078	
공공 1	공공 1	4,186	-	가정동 160-3 일원	4,186	공공 1	공공 1	4,186	-	가정동 160-3 일원	4,186	-	획지 분할 불허, 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합병 허용
공공 2	공공 2	8,097	-	가정동 160-5일원	8,097	공공 2	공공 2	8,097	-	가정동 160-5일원	10,559	증)2,462	
공공 3	공공 3	14,831	-	가정동 283-5 일원	14,831	공공 3	공공 3	14,831	-	가정동 283-5 일원	14,447	감)384	

사. 도시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아.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생략)
-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생략)
- 라.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생략)
-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생략)
- 바. 공공업무용지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1 ~ 공공3	위치	공공1 ~ 공공3		
	해당블럭	• 공공1, 공공3	• 공공2	
	용도	허용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사무소). 단,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공공1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습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자동차경기장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중 일방개입제공업의 시설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전신전화국에 한함) 27.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허용 (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부대시설 14.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한함. 단, 한 획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일부 구간 포함 되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에 한함) 	
	기타	• 주용도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 300% 이하	
	높이(층수)	• 200m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 공공3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은 가로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각각의 가로경관구간의 성격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면에 냉난방시설 실외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합용지내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는 지역 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Ⅳ편 제2장(건축물 재료 및 색채), 제3장(옥외광고물), 제4장(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8조(건축기준의 완화)’에 따른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의 합병 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학교, 유치원, 주차장, 주유소, 종교시설(변경없음) (생략)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생략)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생략)
-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생략)
- 라.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생략)
-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생략)
- 바. 공공복합업무용지(기정)
- 바. 공공업무용지(변경)
- 사.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1호

산곡7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2009.11.2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2011.12.26.)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의 산곡7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전 :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후 :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 주 :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 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으로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85,395	감) 373	85,022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변 경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2.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명칭 변경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및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85,395	감) 373	85,02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5,395	감) 373	85,022	100.0	-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폐지	41	효성동 광2-6 ~ 대1-1	일반 미관지구	대로 2-36	149,850	5,220 4,770	편측15	-	-
폐지	76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일반 미관지구	대로 2-32	31,360	893	양측15	-	-

※ 주 : 괄호()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41	효성동 광2-6 ~ 대1-1	• 일반미관지구 폐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폐지	76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일반미관지구 폐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2) 토지이용계획(변경)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구역면적	85,395	감) 373	85,022	100.0	-	
공동주택	63,730	감) 592	63,138	74.3	-	
종교시설1	1,287	-	1,287	1.5	교회1	
종교시설2	2,243	-	2,243	2.6	성당	
종교시설3	188	-	188	0.2	교회2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7,947	증) 219	18,166	21.4	-
	도로	8,879	감) 59	8,820	10.4	-
	공원	749	-	749	0.9	-
	녹지	6,058	증) 395	6,453	7.6	-
	주차장	597	-	597	0.7	-
	체육시설	1,152	-	1,152	1.4	-
	사회복지시설	281	-	281	0.3	-
	학교	231	감) 117	114	0.1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2	30~3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8,100 (95)	도회동 대로2-4	부천시계	-	건고 제37호 (76.3.27)	-
기정	대로	2	36	30~35	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4,950 (98)	십정동 대로1-1	청천동 고속1-1	-	인고 제1336호 (88.6.29)	-
기정	중로	2	728	15~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0	대로2-36	소로2-1	-	경고 제206호 (76.8.11)	-
기정	중로	3	243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6	소로2-1	소로1-1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변경	중로	3	243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0	소로2-1	소로1-1	-	-	선형 조정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5 (84)	산곡동 대로2-32	산곡동 소로2-1	-	경고 제206호 (76.8.11)	-
변경	소로	1	1	10~13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5 (77)	산곡동 대로2-32	산곡동 소로2-1	-	경고 제206호 (76.8.11)	선형 조정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	중로3-243	산곡여중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기정	소로	2	1	8~1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70 (157)	대로2-32	대로2-36	-	경고 제206호 (76.8.11)	-
변경	소로	2	1	8~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70 (157)	대로2-32	대로2-36	-	경고 제206호 (76.8.11)	선형 조정

※ 괄호()는 구역내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3-243	중로 3-243	• 연장 증가 - L : 386m → 390m(증 4m) - B : 12m	• 녹지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증가
소로 1-1	소로 1-1	• 연장 감소 - L : 325(84)m → 325(77)m (감 7m) - B : 10 ~ 13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연장 감소
소로 2-1	소로 2-1	• 폭원 감소 - L : 870(157)m - B : 8~16m → 8~12m (감 4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폭원 감소

나.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주차장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597	-	597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주차장 선형변경

다.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749	-	749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라.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3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1,781	감) 194	1,587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913	감) 913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	증) 947	947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3,364	감) 3,364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	증) 3,919	3,91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 녹지3	• 면적 변경 - 1,781㎡ → 1,587㎡, 감) 194㎡	• 완충녹지 최소폭원 확보를 위해 녹지선형 및 면적 변경
1	경관 녹지1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1 913㎡ 폐지 → 경관녹지1 947㎡ 신설, 증) 947㎡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결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경관 녹지2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2 3,364㎡ 폐지 → 경관녹지2 3,919㎡ 신설, 증) 3,919㎡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결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교육환경보호 및 학교시설 정형화에 따른 녹지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마.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414	산곡여중	부평구 산곡동 228-5번지 일대	13,260 (211)	증) 69 (감 142)	13,329 (69)	인고 제594호 (82.12.30.)	-
변경	60	산곡남 초등학교	부평구 산곡동 231-1번지 일대	14,151 (20)	증) 25 (증 25)	14,176 (45)	인고 제594호 (82.12.30.)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4	산곡여중	• 선형변경 - 13,260㎡(211㎡) → 13,329㎡(69㎡) 증) 69㎡ (감 142㎡)	• 산곡7구역 내 학교시설 제척 및 학교 시설정형화를 위해 학교시설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60	산곡남초	• 선형변경 - 14,151㎡(20㎡) → 14,176㎡(45㎡) 증) 25㎡ (증 25㎡)	• 학교시설 정형화를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바.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체육시설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1,152	-	1,152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공공에 부지매각

사.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사회복지 시설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281	-	281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부지만 무상귀속, 선형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 시설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281㎡)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형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분	기준	계획면적
총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text{㎡} + (1,621 * 2\text{㎡}) = 3,742\text{㎡}$ 이상 	6,316.93㎡
어린이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text{㎡} + (1,621 * 0.7) = 1,634.7\text{㎡}$ 이상 	1,750.00㎡
주민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설치 	540.00㎡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text{㎡} + (1,621 * 0.1\text{㎡}) = 212.1\text{㎡}$ 이상 	470.00㎡
커뮤니티시설	-	2,386.93㎡
작은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 이상 	420.00㎡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750.00㎡
근린생활시설	-	2,515.66㎡
경비실	-	30.36㎡ (2개소)
세대창고	-	6,087.26㎡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대 이상의 경우, $10 + (\text{세대수} - 50) \times 0.05\text{㎡}$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10 + (1,621 - 50) * 0.05\text{㎡} = 88.55\text{㎡}$ 이상 	270.0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계획	비고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산곡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85,395	획지1	63,7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250%이하)	80m이하																			
			획지2	1,287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30m이하																			
			획지3	2,243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30m이하																			
			획지4	1,152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5	281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11	188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30m이하																			
			지정 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획지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1,2,3,4,5,1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위 치</th> <th>계획내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건축선</td> <td rowspan="2">획지1</td> <td>중로3-243,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td> <td>폭6m지정</td> <td rowspan="4">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td> </tr> <tr> <td>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td> <td>폭3m지정</td> </tr> <tr> <td>획지2</td> <td>소로 1-1, 중로3-243호선</td> <td rowspan="2">폭2m지정</td> </tr> <tr> <td>획지3</td> <td>중로3-243, 소로2-1호선</td> </tr> <tr> <td>획지11</td> <td>소로2-1호선</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획지1	중로3-243,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폭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폭3m지정	획지2	소로 1-1, 중로3-243호선	폭2m지정	획지3	중로3-243, 소로2-1호선	획지11	소로2-1호선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획지1	중로3-243,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폭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폭3m지정																								
	획지2	소로 1-1, 중로3-243호선	폭2m지정																								
	획지3	중로3-243, 소로2-1호선																									
획지11	소로2-1호선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부지제공 18.3% + 공공시설부지확보 1.7% + 지하주차장 계획 10% - 계획용적률 : 24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th> <th>40%이상</th> <th>30%이상 40%미만</th> <th>20%이상 30%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용적률 인센티브</td> <td>10%</td> <td>5%</td> <td>3%</td> </tr> </tbody> </table>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85,022	획지1	63,13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5.1%이하	250.0%이하	85m이하																																			
			획지2	1,287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	30m이하																																			
			획지3	2,243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	30m이하																																			
			획지4	1,152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	20m이하																																			
			획지5	281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50%이하	-	20m이하																																			
			획지11	188	종교용지	60%이하	250%이하	-	30m이하																																			
			지정 용도	획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획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획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획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 1,2,3,4,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위 치</th> <th>계획내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건축선</td> <td rowspan="2">획지1</td> <td>중로3-243,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td> <td>폭6m지정</td> <td rowspan="4">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td> </tr> <tr> <td>중로2-728호선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td> <td>폭3m지정</td> </tr> <tr> <td>획지2</td> <td>소로 1-1, 중로3-243호선</td> <td rowspan="2">폭2m지정</td> </tr> <tr> <td>획지3</td> <td>중로3-243, 소로2-1호선</td> </tr> <tr> <td>획지11</td> <td>소로2-1호선</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획지1	중로3-243,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폭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2-728호선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폭3m지정	획지2	소로 1-1, 중로3-243호선	폭2m지정	획지3	중로3-243, 소로2-1호선	획지11	소로2-1호선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획지1	중로3-243,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폭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2-728호선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폭3m지정																																									
	획지2	소로 1-1, 중로3-243호선	폭2m지정																																									
	획지3	중로3-243, 소로2-1호선																																										
획지11	소로2-1호선																																											
완화기준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용적률(%)</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기준용적률</td> <td>210.0</td> <td>-</td> </tr> <tr> <td colspan="2">허용용적률</td> <td>223.8</td> <td>-</td> </tr> <tr> <td colspan="2">상한용적률</td> <td>245.1</td> <td>-</td> </tr> <tr> <td rowspan="4">인센티브 완화량</td> <td rowspan="3">허용</td> <td>공공시설부지 확보</td> <td>1.8</td> <td>체육시설</td> </tr> <tr> <td>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td> <td>6.0</td> <td>우수 / 1+ 등급</td> </tr> <tr> <td>지능형 건축물</td> <td>6.0</td> <td>3등급</td> </tr> <tr> <td>상한</td> <td>공공시설부지 제공</td> <td>21.3</td> <td>조성후 무상귀속</td> </tr> <tr> <td colspan="2">정비계획 용적률</td> <td>245.1%</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210.0	-	허용용적률		223.8	-	상한용적률		245.1	-	인센티브 완화량	허용	공공시설부지 확보	1.8	체육시설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6.0	우수 / 1+ 등급	지능형 건축물	6.0	3등급	상한	공공시설부지 제공	21.3	조성후 무상귀속	정비계획 용적률		245.1%	-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210.0	-																																									
허용용적률		223.8	-																																									
상한용적률		245.1	-																																									
인센티브 완화량	허용	공공시설부지 확보	1.8	체육시설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6.0	우수 / 1+ 등급																																								
		지능형 건축물	6.0	3등급																																								
	상한	공공시설부지 제공	21.3	조성후 무상귀속																																								
정비계획 용적률		245.1%	-																																									
법적상한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 을 “재개발” 로 명칭 변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양 및 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오염 방지대책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토사유출 방지계획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정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공사장 내 주치적인 살수작업 실시 및 청소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km/h이하)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규제(덮개설치, 토사적체 높이 제한)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소음 및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H=6m 이상)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 건설장비 분산배치 이용시 도로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방음림 설치 / 안내표지판과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적사용금지 	-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폐유 : 적정장소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정리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수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재해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부 차 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 구축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는 험프형으로 설치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가.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

기준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총 세대수의 17% 이상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함

9)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

기 정	변 경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10) 법 제17조 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3)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85,395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344	-	-	344	-	-
변경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85,022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선	획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3-243호선, 소로1-2호선 인접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 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획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1, 중로3-243호선변 		종교용지 (교회1)
	획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3-243, 소로2-1호선변 		종교용지 (성당)
	획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2-1호선변 		종교용지 (교회2)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화재 및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홍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962	674	288	1,644	-

※ 무허가 15세대 가옥주 포함

※ 계획세대수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위 치	면적(㎡)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 고
산곡2-2	재개발	산곡동 179	44,457.9	정비계획 변경 20.09.07.	준공	-
산곡3	재개발	산곡동 180	26,195.0	정비계획 변경 20.03.11.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산곡4	재개발	산곡동 63-58	39,381.8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7.08.	준공	-
산곡5	재개발	산곡동 370-58	88,025.5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3.17.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 부평구 재개발 정비사업 일반현황(부평구청)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획내용
이주철거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관련기관 비상 연락망 및 자율 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이주철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여건 차단 공사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수 없도록 함
공사착공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단지 내 공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획내용
단지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동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공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19)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변경)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산곡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285	획지1	63,730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획지2	1,287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1)
		획지3	2,243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종교용지(성당)
		획지4	1,152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체육시설
		획지5	281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획지6	749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공원
		획지7	913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완충녹지1
		획지8	3,364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완충녹지2
		획지9	1,781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완충녹지3
		획지10	597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주차장
		획지11	188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2)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76,088	획지1	63,138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공동주택용지
		획지2	1,287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1)
		획지3	2,243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종교용지(성당)
		획지4	1,152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체육시설
		획지5	281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획지6	749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공원
		획지7	947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경관녹지1
		획지8	3,919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경관녹지2
		획지9	1,587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완충녹지3
		획지10	597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주차장
		획지11	188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종교용지(교회2)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기 준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총 세대수의 17% 이상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다.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용계획	비 고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20)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차량진출입구 계획

○ 대상지 북서측 간선도로변 및 종교시설, 체육시설 일부구간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대로2-32호선 변 / 대로2-36호선 변 종교시설 / 체육시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나. 교통처리계획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안전확보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라.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21.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2호

하천(운연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지방하천(운연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우리시 수질환경과(☎ 032-440-3624) 및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32-440-52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재하수과(☎032-453-841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1년 6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지방하천 운연천은 현 제방이 계획홍수위에 비해 낮고 계획하폭이 부족하여 홍수시 농토 및 인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으로써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에 의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향후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구 분	주 요 시 설 물 규 모
축 제 공	L=4,457m, 흙깎기 44,976m ³ , 흙쌓기 26,272m ³ , 사토 18,704m ³
호 안 공	식생호안블럭 L=1,352m(9,668m ²), 식생 매트리스 L= 2,714m(20,352m ²) 전석붙임(굴림석) L=238m(538m ²)
구 조 물 공	배수통관 6개소, 중배수관 1개소,
하천시설물공	자연형 여울낙차공 8개소(징검다리 4개소)
교 량 공	교량 재설치 3개소
포 장 공	도막포장(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L=2,036m(7,533m ²), 콘크리트포장 L=1,585m(6,340m ²)
부 대 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 서창동 810번지
나. 위치도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당초]

가. 착수예정일 : 2020년 11월

나. 준공예정일 : 2022년 11월

[변경]

가. 착 수 일 : 2020년 11월 30일

나. 준공예정일 : 2022년 11월 19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별첨 1]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당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20이전	2020	2021	2021이후	
합 계	18,744	4,000	-	7,110	7,634	
사업비	설계비	421	421	-	-	-
	보상비	9,446	1,169	-	5,000	3,277
	공사비	7,900	2,276	-	2,000	3,624
	감리비	917	124	-	100	693
	시설부대비	60	10	-	10	40
재원조달 계획	국 비	2,000	2,000	-	-	-
	시 비	16,744	2,000	-	7,110	7,634

[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20이전	2020	2021	2021이후	
합 계	18,744	4,000	-	7,267	7,477	
사업비	설계비	421	421	-	-	-
	보상비	9,446	1,169	-	5,000	3,277
	공사비	7,900	2,276	-	2,000	3,624
	감리비	917	124	-	257	536
	시설부대비	60	10	-	10	40
재원조달 계획	국 비	2,000	2,000	-	-	-
	시 비	16,744	2,000	-	7,267	7,477

9. 공사에정공정표

[당초]

공종	월별 보할 (%)	착수일로부터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축 제 공	18.40	1.6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50		
호 안 공	29.90		3.80	3.70	3.70	3.70	3.70	3.70	3.80	3.80				
구조물공	3.00			0.60	0.60	0.60	0.60	0.60						
하천시설물공	3.40				0.68	0.68	0.68	0.68						
부체도로공	0.20						0.10	0.10						
교 량 공	9.00			1.25	1.30	1.30	1.30	1.30	1.30	1.25				
포 장 공	15.40					3.85	3.85	3.85	3.85					
부 대 공	20.70	1.70	1.70	1.70	1.70	1.70	1.85	1.85	1.70	1.70	1.70	1.70		
계	100.0	3.30	7.20	8.95	9.68	13.53	13.78	13.78	13.03	8.45	3.40	3.20	1.70	
		3.30	10.50	19.45	29.13	42.66	56.44	70.22	83.25	91.70	95.10	98.30	100.0	

[변경]

공종	월별 보할 (%)	착수일로부터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축제공	21.00	0.02	0.82	0.90	0.741	1.48	2.77	2.77	3.61	3.61	1.79	1.39	1.1	
호안공	21.48			6.75			3.38	3.38	3.38	3.38		0.24	0.97	
구조물공	4.15			0.64	0.43	1.6	1.1		0.11	0.27				
하천 시설물공	4.61			0.6			1.48		1.34	1.18				
교량공	10.84			1.67	0.83	1.9	3.8		0.88	1.76				
포장공	12.03								4.13	4.13			3.77	
부대공	25.89	0.35	2.53	2.57	2.57	2.57	2.57	2.92	2.58	2.58	2.58	0.07		
계	100.0	0.37	3.34	13.13	4.58	7.57	15.12	9.07	16.02	16.92	4.37	3.70	5.83	
		0.37	3.71	16.84	21.42	28.99	44.10	53.17	69.20	86.11	90.48	94.17	1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1 일반 사항

- 1)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지방하천을 다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주력하여야 한다.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 주력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는 평시와 수방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은 본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다.
 - 지방하천 정비 실태와 점용상황 등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및 오염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사항을 강구한다.
 - 점검 순찰반을 편성하여 수해 상습지역이나 오물 투기 가능지역 등을 순시하면서 특히 제방, 호안, 수문 등과 같은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고하며 기록으로 순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한다.
 - 하천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정시기에 유지보수가 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및 오염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지방하천은 하천 및 지형적 특성상 지방하천 시점 상류부로부터 유발하는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토사 및 유목 등의 붕괴·유실과 산업폐기물 등 부유물질의 유하로 하천 제방은 물론 구조물 등의 붕괴 또는 유실로 저지대의 가옥, 농경기반시설 등의 유실 또는 침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이력이나 유발 요인 등을 상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3) 도시를 지나거나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0.2 지방하천 주요 구조물 유지관리

(1) 제방 유지관리

- 1) 제방에 도로가 설치된 경우
 - 평상시에 하천순찰이 가능해야 한다.
 - 홍수기의 하천순찰과 방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장래의 하천공사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제방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제방의 유지관리상 제방 단면을 손상시키는 구조물의 설치를 지양 부득이 수문 등의 구조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제방의 구조적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제방의 유지

- 독마루와 비탈면의 유지는 물론 제체의 균열이나 누수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제방 독마루 및 비탈면에 잡초 및 식생이 무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때불임을 하였을 경우에는 때가 잘 성장하도록 흙의 피복과 시비 등에 유의 한다.

(2) 하도 유지관리

- 토사 등에 의해 하도의 변화가 많이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전 적절한 준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통수에 지장이 없는 한 지나친 식생 훼손은 지양하고, 준설 작업시 생태보존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이를 고려하되 절대적으로 통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준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준설의 주기는 연도별 하천 상황을 고려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준비기간에 적절히 시행하여야 하며, 각 지점에 적합한 준설 기준을 관리주체별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하천변 쓰레기 제거, 잡초제거 등의 작업도 하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호안 유지관리

1) 비탈 덮기의 유지

- 돌쌓기와 돌붙임 : 탈석, 배부르기, 줄눈의 탈락 등은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식생매트 설치 :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종자와 비료 등을 매트류에 부착시키거나 매트부설 후 살포하여 비탈면을 피복하는 공법으로 고정핀을 이용하여 사면에 부착시키고, 매트 부착면이 고르게 접합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콘크리트 블록붙임 : 블록표면에 요철을 만들고 강봉으로 연결하여 굴요성을 갖도록 하며 뒤채움 콘크리트를 충분히 하고 이음 눈금에 모르타르를 채워서 흡출에 대비한다.
- 비탈덧기의 기초 : 비탈덧기의 집중하중에 의한 토대목의 파괴, 기초 지반의 처리부실, 하상세굴에 의한 토대목의 부상 또는 부식이 비탈덧기의 파괴요인임으로 유의한다.

2) 기초의 유지.

- 토대공은 한줄 토대, 사다리 토대 등이 있으며, 토대공의 파괴를 발견하면 즉시 보완한다.
- 바자공은 이면에 공동이 생기거나 상부의 함몰, 변형, 부패 등이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원인별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3) 밑다짐의 유지

- 밑다짐에서는 채움돌, 돌붙임, 사석 등이 유실되기 쉽고 목공 밑다짐틀류 등에서는 격자가 파괴될 수 있다. 블록 밑다짐에서는 연결철봉의 절단 또는 뒷면토사의 유출이 파괴를 초래하므로 원인별로 보수,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하상 유지관리

- 돌붙임 부분의 돌이 빠져 나간 곳을 가능한 빨리 보충하며 콘크리트 부분은 균열의 발생 시 조기에 수선한다. 특히 하상유지공 하류단의 세굴은 즉시 보강수선을 실시한다.
- 본체 기초공의 결함은 먼저 물받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며, 물받이의 일부함몰 또는 균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리한다.
- 하상유지공 하류부의 밑다짐공보다 깊게 세굴되어 드러나게 되는 경우, 밑다짐공을 연장하거나 본래의 밑다짐공을 낮게 다시 설치하는 등 현장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목공침상의 아래 부분은 돌망태공, 채석공으로 보수할 수 있다. 붙임호안이 파손된 곳은 즉시 보수해야 하며 물받이 바로 아래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해야 한다.

(5) 여울과 소의 유지관리

-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석재의 적절한 크기를 선정했는지라도 홍수 시에는 하상의 매몰대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목공에 의하여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형틀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 수제에 의하여 소를 형성할 경우에는 밑부분이 세굴되기 쉬우므로 세굴방지에 대한 대책과 막힘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6) 생태 시설물 관리

- 친수공간에 식재된 수목, 수생식물 등은 계절에 따른 적절한 관리 및 장기간에 걸친 생육과정 또는 천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방하천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이용시설은 홍수 이후에는 시설물 피해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한다. 지역 주민 및 단체 회원은 아름다운 지방하천 가꾸기 사업 모니터링, 시설물의 유지 관리 활동에 주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지방하천의 친수공간은 홍수 시에 침수되기 때문에 도입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식생호안 등과 같이 지방하천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입시설은 기존의 시설보다 유지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도입할 경우 사후 유지관리계획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7) 기타 소규모 시설 관리**1) 교량**

- 협소한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급증되는 수량과 임목 또는 산업용 자재 등의 유하 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 교량구간에 대한 통수능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을 홍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교량의 길이가 계획하폭보다 짧거나 제방 계획고보다 낮아 홍수피

해를 유발시키는 교량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연장시공 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 하여야 한다.

- 경간장이 짧아 홍수 시, 유목 등 부유물질이 교각에 걸려 급격한 수위를 상승시키는 다경간 BOX암거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은 철거 후 재가설 하여야 한다.
- 수리학적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잠수교는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수해를 유발하므로, 기능성과 하천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물

- 우기전 배수시설물의 유송잡물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수능력이 부족한 구조물은 철거하고 배수능력에 부합하는 크기의 구조물로 재가설 한다.
- 노후된 배수시설물은 철거하고 규격에 맞는 배수시설물로 재가설 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물 유출구에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8) 환경 관리

1) 수량관리

- 지방하천의 수환경 보전을 위한 수량의 확보대책은 장·단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단기적 대책으로는 다른 수계에서 도수하는 방법, 지하수 개발, 처리수 재이용 등을 들 수 있다.
- 장기적 대책으로는 수계가 위치하고 있는 유역에서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지하수위 함양), 유량확보용 저수지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지방하천 관리자는 유역 내 물순환 건전화를 염두에 두고 침투시설, 저류시설 등을 꾸준히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수질관리

지방하천 수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유역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한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 그리고 하수도 정비 등 환경 개선사업에 의해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 시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 내에서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수질개선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지방하천수질 개선방법

지방하천관리자가 지방하천환경관리 측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차적인 하천수질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오니준설
- 유황개선
- 오염수 분리수로
- 오염부하 감소 및 정화
- 기타

① 오니준설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준설하여 하천수의 오염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수질개선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법과 효과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없으므로 이 방법은 준설오니의 처리방안과 수질개선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유황개선

하천수 오염이 심하고 오염발생원에 대한 자체 정화대책이 다소 어려운 하천은 유량이 풍부한 하천에서 상류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저류한 유량 또는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여 오염하천을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수 분리수로

본류에 유입하는 오염된 지천수나 오염수가 하천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④ 오염부하 감소 및 정화

자갈이나 폐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접촉산화법, 산화지, 침전지, 침투지, 그리고 토양처리법 등을 오염하천에 설치하여 수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9) 가뭄 시 유지관리

가뭄이 발생할 경우 농작물 등의 수량 확보를 위하여 지방하천의 하상바닥굴착 취수 등은 물론, 둔치나 제방단면 등을 훼손하여 취수용 호수 등의 설치로 지방하천의 심각한 훼손 행위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호우·홍수 시 지방하천의 제방 및 호안 등 부대시설물이 유실될 우려가 예견됨으로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지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천 훼손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수방관리**1) 제방의 수방관리**

- 제방은 그 기능면에서 하천 수방시설물 중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관리대상이다.
- 하천제방관리상 유의할 사항을 홍수 시와 평상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평상시 관리

- 제방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감시와 순시가 필요하며, 사고유무와 더불어 제방 비탈면(고수호안)과 제내 측구까지도 조사하여 기록토록 한다.
- 제방의 식재는 계절별로 손질을 제대로 하고, 홍수소통이나 비탈면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유사시(홍수 시)에 대비하여 제방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의 주변감시와 순시는 평상시에도 철저히 해야 하며, 만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우기에 앞서서 철저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과 더불어 고수호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망되며, 특히 홍수터(둔치) 내로 차량을 진입시키고 주차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며, 폐유 등으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 제방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체제에 과하중이 작용하여 균열이 발생하거나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도로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홍수 시 관리사항

- 홍수가 발생되면 평상시의 수위보다 수면이 상승하여 최고수위에 도달하고, 수면이 점점 하강하여 평상시 수위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은 기간을 홍수기간이라고 부르고, 최고수위에 도달할 때까지를 수위 상승기라 하며, 그 이후 평상시 수위로 되돌아올 때까지를 감수기라고 부른다. 일반하천에서는 상승기보다는 감수기기가 약간 긴 편이나, 도시하천의 경우는 상승기가 짧고 감수기가 훨씬 길게 된다. 따라서 호우시의 도시하천에 대해서는 상승기에 제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방의 월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체의 위약도로 보면 상승기보다도 감수기가 보다 체체가 위약하게 되므로, 하천의 수위가 최고수위에 달했다가 하강하고 있는 기간(감수기)은 차량 등의 통행은 억제하고, 상승기보다도 훨씬 철저한 감시와 관리에 임해야 한다.
- 배수암거나 수문상자 및 육갑문 등과 같이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과, 제방과의 접촉개소 등에서는 최고수위 발생 시를 전후하여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제천제방은 단면폭이나 제방고에 비하여 연장이 길고, 최고수위의 지속기간(보통 2시간 전후)도 짧으므로 제체내부에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보통 토사로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하천 제방에서는 다수의 배수암거나 수문상자, 그리고 육갑문의 지주벽체 등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제방구성 재료인 보통토사와의 밀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을 통하여 제방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콘크리트 벽면과의 접촉부)에는 간헐재(틈 사이를 채우는 재료)로서 점토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벽면과 보통토사가 밀착될 수 있다.
- 하천제방은 일반적으로 토사로 축조된 시설물이므로 절대로 월류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여유고(free board)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기타 시설물의 수방관리

(가) 하도

- 홍수 시 하도경사는 수면경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하류 간의 하도경사에 급변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하도경사의 급변점은 하상의 골재채취, 제방법선의 변경 또는 하폭의 급격한 변동 등 개발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도계획 시 이러한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홍수전에 하도내 이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의 라이닝 및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홍수 시 치수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2) 호안

- 호안은 홍수에 의하여 그 기초가 세굴되거나 제체의 액상화 현상에 따른 유동으로 인하여 파괴될 수 있으므로 홍수에 대비하여 호안과 제체의 접촉면에서 누수현상이나 박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호안은 재질특성의 불연속상태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부분은 흐름에 의하여 제체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이 끝나는 제체부분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위유지시설 및 하상유지시설

- 하상유지 시설물 또는 수위유지 시설물 등은 통수능의 불연속상태를 초래하여 유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의 월류 및 누수, 유속의 증가에 따른 세굴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상하류의 불연속 상태가 가급적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상유지 시설물 또는 수위유지 시설물의 하류부는 낙차와 토사공급의 중단에 의하여 하상저하가 발생하여 보와 제체의 접합부 부근에서 측방세굴에 의한 보와 제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 전후에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류부의 하상저하는 하류부 하상토의 조립화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별첨1] 토지 및 물건(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권리 명세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도	시,군	구	동,리	구분	유	입	공	철	구	답	대	도	전	제	천	총합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필지수						2			3	2	2	9		
편입면적											154			1,500	161	24,739	26,644	
운연동			필지수	1	9						2	143	1	48	88	18	41	351
			편입면적	491	3,120						76	13,323	7	4,135	14,130	4,795	34,585	74,662
전체 필지수					1	9	0			2	145	1	48	91	20	43	360	
전체 편입면적					491	3,120	0			76	13,477	7	4,135	15,720	4,956	59,324	101,306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0		답	349	349	349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69		전	1,499	1,499	1,499		인천광역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19		전	21	21	21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6-5		답	2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6-6		답	9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7		전	40	40	40		인천광역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68		전	122	122	122		인천광역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3		천	626	626	626		국(기획재정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18		천	5,456	5,456	5,456		국(건설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4		천	415	415	415		국(국토해양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		답	78	78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0-9		답	24	24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5-32		천	65	65	65		국(건설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5-33		천	32	32	32		국(건설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0-5		답	19	19	19		인천광역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6-1		도	124	124	124		인천광역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6-2		전	318	318	318		인천광역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		도	13	13	13		인천광역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28		답	22	22	22		인천광역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61		도	15	15	15		인천광역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59		도	104	104	104		인천광역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58		도	13	13	13		국(건설부)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62		도	15	15	15		인천광역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60		도	3	3	3		인천광역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8		도	43	43	43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9		도	29	29	29		인천광역시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		천	166	166	166		국(건설부)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24		도	1	1	1		인천광역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32		전	12	12	12		인천광역시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39		전	37	37	37		인천광역시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40		전	1	1	1		인천광역시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17		전	79	79	79		인천광역시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16		전	109	109	109		인천광역시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7		천	167	167	167		국(건설부)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6		천	67	67	67		국(건설부)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1-5		도	104	104	104		국(건설부)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1-3		도	2	2	2		국(건설부)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9-2		전	202	202	202		인천광역시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9-6		전	45	45	45		인천광역시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9-4		전	220	220	220		인천광역시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9-3		전	426	426	426		인천광역시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9-1		전	242	242	242		인천광역시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5-5		천	65	65	65		국(건설부)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3		전	62	62	62		한국토지주택공사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9		전	17	17	17		인천광역시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6		전	128	128	128		인천광역시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13		천	383	383	383		국(건설부)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43		천	3,945	3,945	3,945		국(건설부)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44		천	3,454	3,454	3,454		국(건설부)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8-9		전	109	109	109		한국토지주택공사
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8-4		전	78	78	78		인천광역시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8-5		전	10	10	10		인천광역시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5-8		천	21	21	21		국(건설부)
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5-4		천	45	45	45		국(건설부)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1-2		답	53	53	53		한국토지주택공사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1-5		답	30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1		답	122	122	122		한국토지주택공사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2-3		답	206	206	206		한국토지주택공사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2-1		답	212	212	212		인천광역시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2-2		답	75	75	75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6-5		구	48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3-2		답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6-4		구	28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2		천	138	138	138		인천광역시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2-4		천	86	86	86		인천광역시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2-1		천	165	165	165		인천광역시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2-3		천	151	151	151		인천광역시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1		전	39	39	39		한국토지주택공사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0-1		전	87	87	87		한국토지주택공사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2-2		천	220	220	220		인천광역시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3-2		천	385	385	385		인천광역시
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3-1		천	119	119	119		인천광역시
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3-3		천	12	12	12		인천광역시
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3		천	33	33	33		인천광역시
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4-2		답	101	101	101		인천광역시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4-1		답	118	118	118		인천광역시
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4		전	11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4-4		전	138	138	138		한국토지주택공사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4-5		답	6	6	6		인천광역시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5		전	556	556	556		인천광역시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2		전	242	242	242		인천광역시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5-34		천	89	89	89		국(건설부)
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4		답	485	485	485		인천광역시
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8-7		답	225	225	225		인천광역시
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1-1		전	165	165	165		인천광역시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0-3		답	70	70	70		인천광역시
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0-1		답	583	583	583		인천광역시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9-1		답	88	88	88		인천광역시
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9-2		답	3	3	3		인천광역시
9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8-1		답	279	279	279		인천광역시
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88-2		답	19	19	19		인천광역시
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6-4		도	24	24	24		국(건설부)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6-2		도	12	12	12		국(건설부)
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8		전	106	106	106		한국토지주택공사
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7		답	80	80	80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4		답	128	128	128		인천광역시
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6		전	70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3		답	460	460	460		인천광역시
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7		전	212	212	212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8		제	260	260	260		인천광역시
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5		제	241	241	241		인천광역시
1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4		천	1,029	1,029	1,029		인천광역시
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3-4		답	1	1	1		인천광역시
1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3-3		답	15	15	15		인천광역시
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3-7		답	81	81	81		인천광역시
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3-8		답	23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14		천	430	430	430		국(건설부)
1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1		답	351	351	351		한국토지주택공사
1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1-2		답	5	5	5		인천광역시
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1-3		제	351	351	351		인천광역시
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1-1		제	148	148	148		인천광역시
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16		답	70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13		답	59	59	59		인천광역시
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6		답	30	30	30		인천광역시
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8		답	3	3	3		인천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18		답	59	59	59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14		답	79	79	79		인천광역시
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7		답	64	64	64		인천광역시
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0-9		답	58	58	58		인천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8-8		도	5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6-8		도	53	53	53		국(건설부)
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6-3		도	30	30	30		국(건설부)
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7		답	16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9		답	54	54	54		인천광역시
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5		답	10	10	10		인천광역시
1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16		도	4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1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6		답	2	2	2		인천광역시
1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18		도	14	14	14		인천광역시
1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12		도	6	6	6		인천광역시
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14		도	3	3	3		인천광역시
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31		천	97	97	97		국(건설부)
1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1-1		도	144	144	144		인천광역시
133 1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33		도	532	532	532		국(건설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32		천	51	51	51		국(건설부)
1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34		천	19	19	19		국(건설부)
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1		답	76	76	76		인천광역시
1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1		답	63	63	63		인천광역시
1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6		답	77	77	77		인천광역시
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8-3		답	34	34	34		인천광역시
1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8-1		답	226	226	226		인천광역시
1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8-2		답	253	253	253		인천광역시
1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9-1		계	464	464	464		인천광역시
1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9-2		천	490	490	490		인천광역시
1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2		계	494	494	494		인천광역시
1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4		답	93	93	93		인천광역시
1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3		답	58	58	58		인천광역시
1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12		도	23	23	23		인천광역시
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3-5		도	8	8	8		국(건설부)
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14		도	64	64	64		인천광역시남동구
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3-6		도	29	29	29		국(건설부)
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3-7		도	16	16	16		국(건설부)
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14		계	3	3	3		인천광역시
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11		도	23	23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13		도	204	204	204		인천광역시
1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10		도	655	205	205		인천광역시남동구
1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3-20		도	8	8	8		국(건설부)
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15		천	42	42	42		인천광역시
1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12		계	86	86	86		인천광역시
1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천	11,738	11,738	11,738		국(건설부)
1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15		천	168	168	168		국(건설부)
1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1-2		답	36	36	36		인천광역시
1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1-3		답	11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1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0-1		답	8	8	8		인천광역시
1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0-2		답	40	40	40		인천광역시
1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0-3		천	13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16		천	91	91	91		국(건설부)
1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2-2		도	7	7	7		국(건설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8-1		답	97	97	97		인천광역시
1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8-3		전	32	32	32		한국토지주택공사
1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9-1		답	21	21	21		인천광역시
1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9		전	3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17		천	92	92	92		국(건설부)
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6-4		제	285	285	28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1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5		답	6	6	6		인천광역시
1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3-4		답	9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1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3-1		답	2	2	2		인천광역시
1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5-5		답	156	156	156		인천광역시
1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5-2		답	9	9	9		인천광역시
1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5-1		답	139	139	139		인천광역시
1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5-4		답	30	30	30		인천광역시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5-3		천	593	593	593		인천광역시
1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3-5		답	46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
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3-2		답	16	16	16		인천광역시
1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4-2		답	138	138	138		인천광역시
1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4-1		제	213	213	213		인천광역시
1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4-4		제	164	164	164		인천광역시
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4		답	210	210	210		한국토지주택공사
19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4-3		답	9	9	9		인천광역시
1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3-3		전	170	170	170		한국토지주택공사
1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3-4		답	71	71	71		인천광역시
1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3-1		답	193	193	193		인천광역시
1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3-2		천	690	690	690		인천광역시
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1-4		전	148	148	148		한국토지주택공사
1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1-3		답	63	63	63		인천광역시
1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1-1		답	98	98	98		인천광역시
1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03-18		천	401	401	401		국(건설부)
1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0-4		도	38	38	38		국(건설부)
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9-4		전	79	79	7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9-3		답	52	52	52		인천광역시
2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9-1		답	30	30	30		인천광역시
2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8-15		전	82	82	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2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8-12		답	15	15	15		인천광역시
2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8-6		답	2	2	2		인천광역시
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0		도	236	236	236		국(건설부)
2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7		답	31	31	31		인천광역시
2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4		계	269	269	269		인천광역시
2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2		계	265	265	265		인천광역시
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		전	778	778	778		한국토지주택공사
2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8		답	81	81	81		인천광역시
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1		계	37	37	37		인천광역시
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9		전	20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2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9		답	292	292	292		인천광역시
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5		답	202	202	202		인천광역시
2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21		전	248	248	248		한국토지주택공사
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3		답	19	19	19		인천광역시
2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2		전	347	347	347		한국토지주택공사
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3		답	372	372	372		한국토지주택공사
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20		답	234	234	234		한국토지주택공사
2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4		답	88	88	88		인천광역시
2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6		답	141	141	141		인천광역시
2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0		답	132	132	132		인천광역시
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82		답	25	25	25		인천광역시
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26		답	3	3	3		인천광역시
2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80		답	4	4	4		국(건설부)
2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9		답	2	2	2		국(건설부)
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69		전	116	116	116		한국토지주택공사
2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09		전	135	135	135		한국토지주택공사
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49		답	142	142	142		인천광역시
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42		답	31	31	31		국(건설부)
2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		전	25	25	25		한국토지주택공사
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36		답	68	68	68		국(건설부)
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07		답	66	66	66		인천광역시
2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58		답	15	15	15		인천광역시
2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61		답	15	15	15		국(건설부)
2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64		답	94	94	94		인천광역시
2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03		도	275	275	275		국(건설부)
2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8		도	322	322	322		국(건설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22		도	225	225	225		인천광역시남동구
2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4		천	350	350	350		인천광역시
2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3		제	336	336	336		인천광역시
2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23-31		도	151	151	151		국(건설부)
2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69-1		답	317	317	317		인천광역시
2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73-4		답	183	183	183		인천교통공사
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73-1		답	72	72	72		인천광역시
2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74-3		답	25	25	25		인천광역시
2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74-2		답	82	82	82		인천광역시
2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3		천	320	320	320		인천광역시
2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3-1		제	677	677	677		인천광역시
2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3-2		답	277	277	277		인천광역시
2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4-1		답	51	51	51		인천광역시
2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4		천	115	115	115		인천광역시
2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5-1		답	231	231	231		인천광역시
2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86		답	31	31	31		인천광역시
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48		천	962	962	962		인천광역시
2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9		제	405	405	405		인천광역시
2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25		답	149	149	149		국(기획재정부)
2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21		유	491	491	491		인천광역시
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41		답	17	17	17		국(건설부)
2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37		답	50	50	50		국(건설부)
2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29		답	2	2	2		인천광역시
2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24		도	136	136	136		국(건설부)
2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62		답	164	164	164		인천광역시
2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23		도	92	92	92		국(건설부)
2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63		천	1,037	1,037	1,037		인천광역시
2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22		도	499	499	499		국(건설부)
2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10		천	24,591	24,591	24,591		인천광역시
2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20		도	54	54	54		국(건설부)
2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3		도	9	9	9		국(건설부)
2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23		답	11	11	11		국(건설부)
2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39		답	50	50	50		국(건설부)
2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6		답	45	45	45		국(건설부)
2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8		답	23	23	23		인천광역시
2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83		답	17	17	17		인천광역시
2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5		답	44	44	44		한국토지주택공사
2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27		답	91	91	91		한국토지주택공사
2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2		임	5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2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81		임	4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9		임	66	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
2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0		임	201	201	201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1		임	168	168	168		한국토지주택공사
2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2		전	23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2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6		전	133	133	133		한국토지주택공사
2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7		전	393	393	393		한국토지주택공사
2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5		답	192	192	192		한국토지주택공사
2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1		답	390	390	390		한국토지주택공사
2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6		답	15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
2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05		전	4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02		전	5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8		전	5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2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3		전	34	34	34		한국토지주택공사
2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114		전	17	17	17		국(산림청)
2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		전	701	701	701		인천광역시
2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9-9		임	61	61	61		국(산림청)
2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9-12		임	327	327	327		국(산림청)
2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1-2		임	1,026	1,026	1,026		국(산림청)
2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19-8		도	134	134	134		국(건설부)
2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2		전	155	155	155		인천광역시
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2-6		전	756	756	756		인천광역시
3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10		답	5	5	5		인천광역시
3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5		전	22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3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2-5		전	94	94	94		한국토지주택공사
3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49		답	9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3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8		답	130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3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2-3		전	52	52	52		한국토지주택공사
3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2-4		전	26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3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9		답	456	456	456		한국토지주택공사
3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37		답	79	79	79		한국토지주택공사
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51		전	124	124	124		한국토지주택공사
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3		답	4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3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71		답	2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3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70		답	148	148	148		한국토지주택공사
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50		전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3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67		답	18	18	18		국(기획재정부)
3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34		체	62	62	62		국(국토교통부)
3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37		전	932	932	932		국(국토교통부)
3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39		답	100	100	100		국(재무부)
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38		전	637	637	637		인천광역시
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40		답	54	54	54		국(재무부)
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35		체	99	99	99		국(국토교통부)
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36		전	148	148	148		국(국토교통부)
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26		답	21	21	21		인천광역시
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24		답	44	44	44		인천광역시
3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89		전	4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3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67-3		임	1,262	1,262	1,2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 주몽아파트 11**-9**	이* *
3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4		전	87	87	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3*(운연동)	배* *
3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		전	35	35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3*(운연동)	배* *
3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6		전	17	17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	배* *
3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12		전	503	503	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하로 5**, *층(구월동)	김* *
3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7		전	44	44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	이* *
3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6		전	236	236	2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번길 4*(간석동)	이* *
3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11		도	4	4	4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190, 1**동 18**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장* * 외3인
3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7		전	65	65	65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190, 1**동 18**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장* *
3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		도	26	26	26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190, 1**동 18**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장* *
3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10		전	3	3	3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190, 1**동 18**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장* *
3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5-57		대	7	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93, 9**동 22**호 (논현동, 냇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조* *
3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10		도	54	54	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	김* *
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8-14		전	61	61	6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81, 1**동 7**호 (송도동,송도더샵그리수퀘어)	김* *
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8-3		전	372	372	372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로28 번길81,1**동7**호(송도동,송도 더샵그리수퀘어)	김* *
3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2-5		답	105	105	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48번길 7-**, 2**호 (만수동)	최* *
3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62		답	321	321	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8번길 7-**, 2**호 (만수동)	최* *
3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0-4		전	84	84	84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1**동 4**호(만수동,햇빛벽산마을아파 트)	최* * 외1인
3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90-2		답	5	5	5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1**동 4**호(만수동,햇빛벽산마을아파 트)	최* * 외1인
3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5-2		답	13	13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6 신동아트빌 3-2**	이* * 외2인
3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2		답	70	70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	박* *
3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34-3		답	42	42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	박* *
3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9-7		전	29	29	29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1086-1 이삭아파트1**-5**	이* *
3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29-8		전	106	106	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8 금호아파트 1**-9**	박* *
3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2-1		전	5	5	5	인천광역시남동구독곡로48번길9, 1**동11**호 (서창동,서해그랑블아파트)	박* *
3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4-5		전	3	3	3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49번길 6*, 3**호 (정왕동)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 *
3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4-6		전	1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03, 3**동 13**호(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구*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4-7		전	1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03, 3**동 13**호(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구* *
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16		전	139	139	13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4**-4	하* *
3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5-17		전	99	99	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51 시대아파트 1**동 10**호	전* *
3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6-1		제	97	97	97	북구작전동1**	김* * 외4인
3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16-2		답	42	42	42	북구작전동**	김* * 외4인
3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03-8		전	4	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60-5 동아아파트 *동 6**호	황* *
3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21		전	364	364	3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 주공아파트 2**동 1**호	서* *
3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68-2		전	70	70	7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54번길 2*, 2**호 (청천동, 상우원룸)	서* * 외4
3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69-4		전	751	751	751	인천 강화군 선원면 철종외가길1*번길 1*	전* *
3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22		전	3,102	480	-	남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동 13**호	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89-22	489-73	전	480	-	480	남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동 13**호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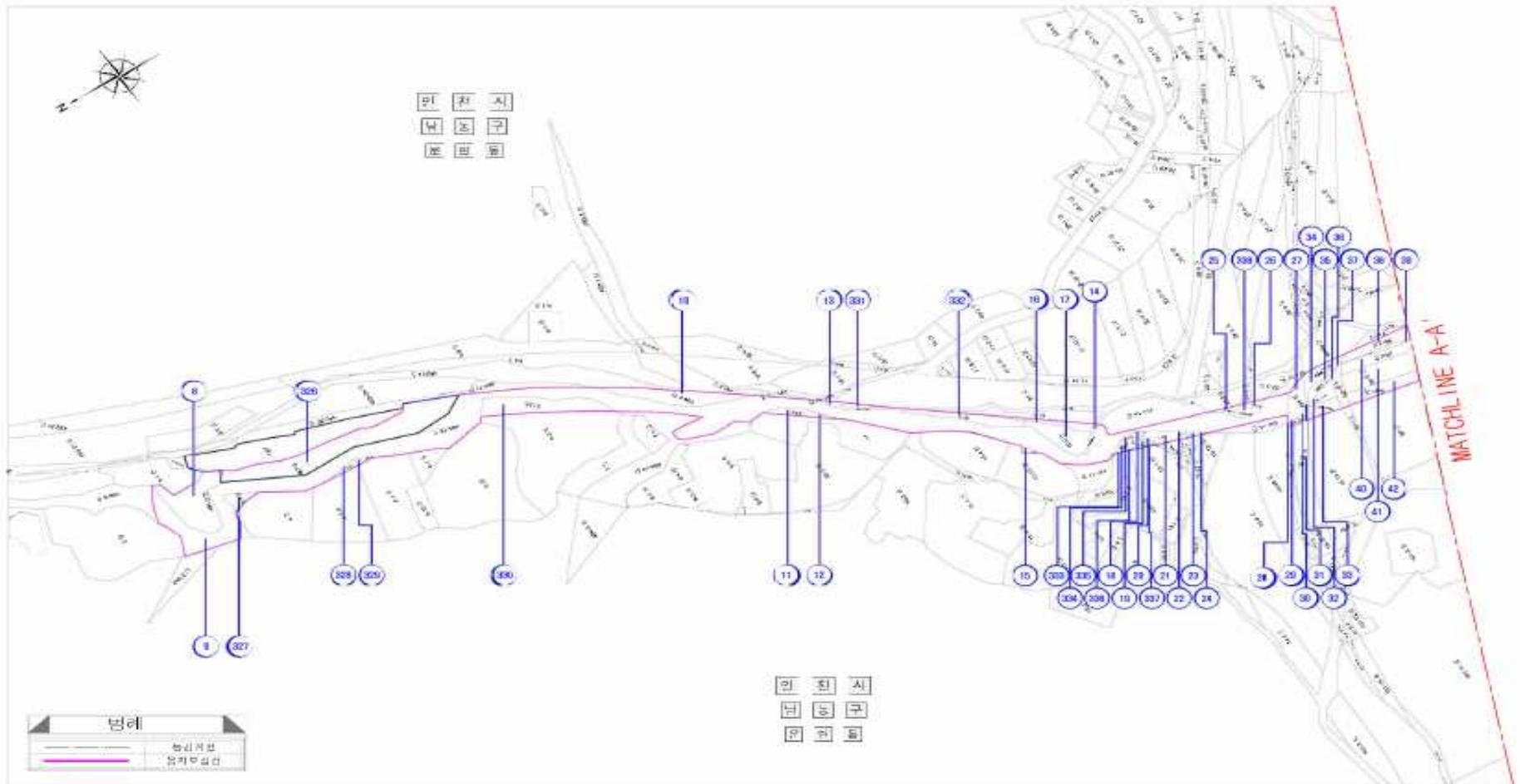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연번	물건의소재지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닭장	철재비닐	㎡	1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 주공아파트 *****	이**
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1	창고	철재비닐	㎡	84.49	35	배**
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침터	철재비닐	㎡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 주공아파트 *****	이**
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94-8	전력주	9019A301	개	1		한국전력
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94-8	소나무		개	10		
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94-8	간판		개	1		
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94-7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9-6	전력주	8919X991	개	1		한국전력
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5-39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9-3	벚나무외		개	13		
1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9-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8-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8-7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8-4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1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8-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	전력주	8919X861	개	1		한국전력
1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0-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0-1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1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0-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2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90-1	전력주		개	1		한국전력
2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8-1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2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8-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2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	전력주	8919X731	개	1		한국전력
2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4-4	전력주	8919X723	개	1		한국전력
2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4-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2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	전력주	8919X711	개	1		한국전력
2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28-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2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29-1	전력주	8919X602	개	1		한국전력
2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29-1	전력주	8919X691	개	1		한국전력
3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29-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3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	전력주	8919Z681	개	1		한국전력
3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5-2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3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5-2	전력주	8919Z673	개	1		한국전력
3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5-10	복숭아나무외			22		
3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6-1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3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1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3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6-3	전력주	8919 661	개	1		한국전력
3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6-1	창고	철재비닐	㎡	57.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 주공아파트 ***동 ***호	서**
3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9 551	개	1		한국전력
4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4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69	물탱크		개	1	인천 서구 백석동 ***-*** 에이동 102호	심**
4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69	창고	컨테이너	㎡	9.30	인천 서구 백석동 ***-*** 에이동 102호	심**
4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9 541	개	1		한국전력
4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9 4	개	1		한국전력
4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9	개	1		한국전력
4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5-3	전력주		개	1		한국전력
4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	246.16		
4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4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8 321	개	1		한국전력
5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73-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5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73	느티나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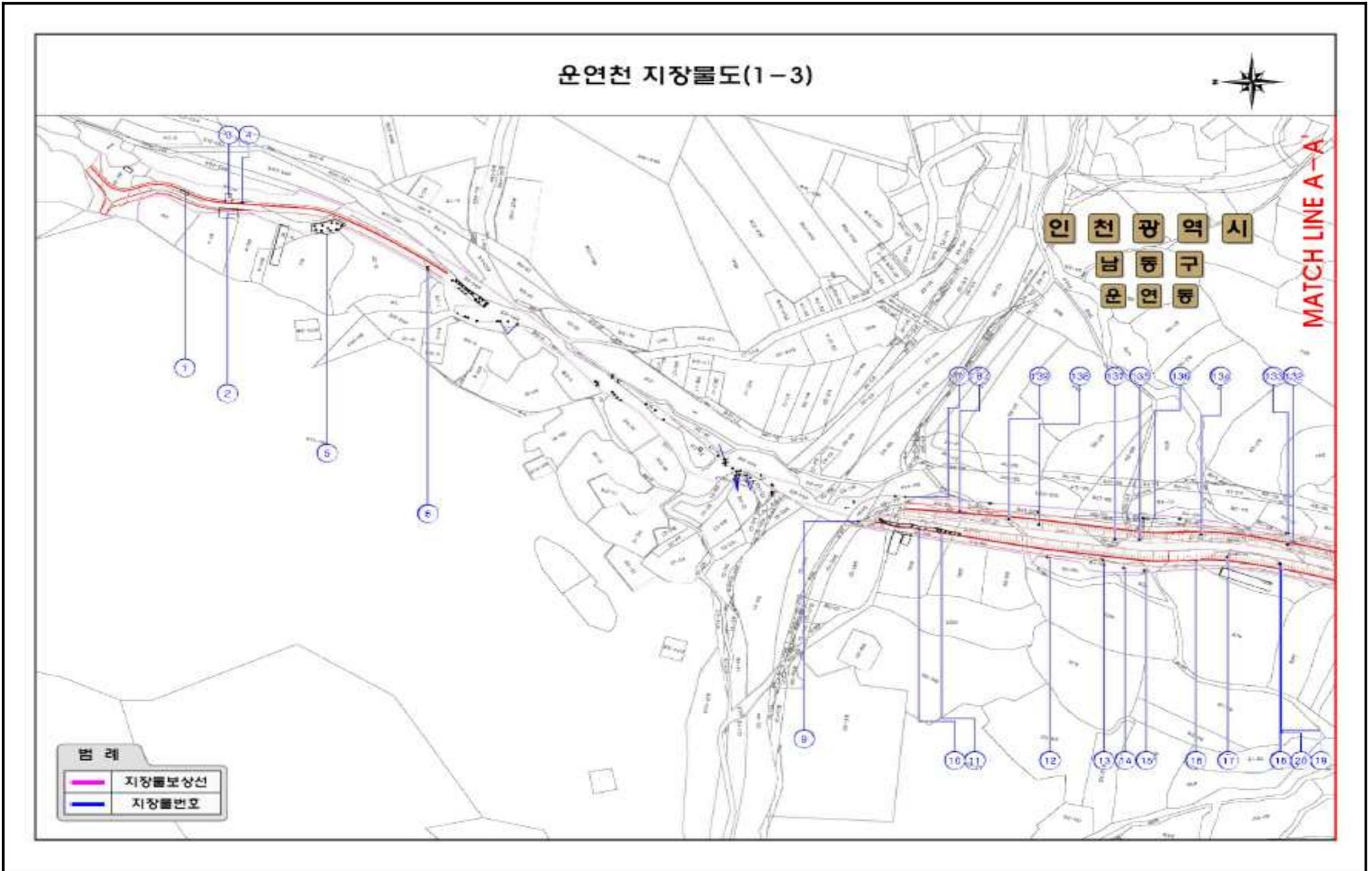
연번	물건의소재지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5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73	느티나무			1		
5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74-4	느티나무			1		
5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74-4	느티나무			1		
5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느티나무			1		
5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느티나무			1		
5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전력주	8919Z312	개	1		한국전력
5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느티나무			1		
5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느티나무			1		
6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6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9Z201	개	1		한국전력
6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보조주	8919Z302	개	1		한국전력
6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느티나무			12		
6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3-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6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3-1	느티나무			13		
6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3-1	느티나무			16		
6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3-2	전력주	8919F291	개	1		한국전력
6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3-1	보조주	8919F293	개	1		한국전력
6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3-1	느티나무			13		
7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8	공주	8918F281	개	1		한국전력
7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7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8F283	개	1		한국전력
7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아카시아			42		
7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8F171	개	1		한국전력
7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40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7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30	전력주	8918F862	개	1		한국전력
7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48	전력주	8918F363	개	1		한국전력
7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9	전력주	8918F351	개	1		한국전력
7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62	EM공급랭크		개	1		
8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48	표지판		개	1		인천광역시청
8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62	이경표		개	1		
8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62	하천명표		개	1		
8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12	높이제한시설		개	1		
8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59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85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810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86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810	표지판		개	1		인천광역시청
8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10	창고	철재비닐	m ²	9.30		
8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5-37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m ²	109.20		
8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92-5	공주		개	1		한국전력
9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19-8	창고	철재비닐	m ²	60.60		
9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10	전력주	8918F292	개	1		한국전력
9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10	전력주	8918F203	개	1		한국전력
9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5	공중화장실	목재, 철재		3.75		
9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5	전력주	8918F202	개	1		한국전력
95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810	전력주	8918F214	개	1		한국전력
9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119	전력주	8918F225	개	1		한국전력
97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810	높이제한시설		개	1		
9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120	우수맨홀		개	1		인천광역시청
9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63	높이제한시설		개	1		
10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58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0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5-49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10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6-6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0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6-20	컨테이너	철재	m ²	15.00		
10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6-11	전력주		개	1		한국전력
10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6-12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연번	물건의소재지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10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96-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0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18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0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01-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0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03-1	전력주	8919Z414	개	1		한국전력
11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03-3	컨테이너	철재	㎡	15.00		
11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03-3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1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4-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1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4-4	컨테이너	철재	㎡	15.00		
11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4-1	가스맨홀		개	1		인천도시가스
11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3-5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1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6-6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1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6-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1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18-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1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5-30	컨테이너	철재	㎡	15.00		
12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15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29-9	가로등		개	1		인천광역시청
12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29-9	전력주	8919Z672	개	1		한국전력
12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29-9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1-3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1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4-7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2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4-4	전력주	8919X724	개	1		한국전력
12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235-6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4-4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2-2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2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2-3	전력주	8919X853	개	1		한국전력
133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8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4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62-1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5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	가스표지판		개	1		인천도시가스
136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62	창고	철재비닐	㎡	9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48번길 *~**, 202호 (만수동)	최**
137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8-4	전력주	8919X971	개	1		한국전력
138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503	전력주	8919X981	개	1		한국전력
139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95-1	전력주	8919X891	개	1		한국전력

용지도(1/4)



인천광역시 환경건설본부 (주) 도시엔지니어링 (주) 엔지니어링 (주)	사업명	북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20 날 짜	서 중 단 위 치 지 역	시 설 명 용 도	관 련 부 호	위치정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만도	도 면 명	용지도(1/4)
	시설/규모	연결/구구							계 획 내 용	축 측	S-1:1,000	도 면 명
	건설분야	노조	건설단계	실시일계	개 정 내 용	서 중 단 위 치 지 역	시 설 명 용 도	관 련 부 호	도면번호	C0160101-001	교차번호	0-1-0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73호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 ☎032-440-4535), 미추홀구(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I.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면 적: 75,084.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 명: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16. 11. 14.~2021. 6. 30.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총 계		75,084.3	100.0	
주거 용지	소 계	29,778.9	39.7	
	공동주택용지	25,946.0	34.6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시설용지	3,832.9	5.1	준주거지역
상업 용지	소 계	13,708.4	18.2	
	상업용지	13,708.4	18.2	상업지역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1,597.0	42.1	
	도 로	16,236.5	21.6	
	주차장	1,404.0	1.9	1개소
	어린이공원	5,284.0	7.0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669.0	8.9	1개소
	연결녹지	2,003.5	2.7	1개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소	성명 또는 명칭	
-	-	-	-	75,099	75,099	-	-	-	-	-	
1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	장	29,061	29,061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2	〃	587-287	도	3,628	3,628	-	국 (국토해양부)	-	-	-	
3	당초	587-293	잡	2,010	2,010	-	기획재정부	-	-	-	
	변경	587-293	잡	2,010	2,010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4	당초	587-294	잡	756	756	-	기획재정부	-	-	-	
	변경	587-294	잡	756	756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5	〃	587-36	구	858	858	-	국 (국토해양부)	-	-	-	
6	〃	587-37	장	31,393	31,393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7	〃	587-50	장	5,862	5,86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8	〃	587-184	잡	102	10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9	〃	587-202	장	512	51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10	〃	587-203	장	602	60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11	〃	587-210	장	144	144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12	〃	587-211	장	171	171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 원)		비용부담주체	비고
			기정	변경		
용현학익 7블록	①매소홀로 재포장	재포장 면적: 3,948㎡	-	1.12	사업시행자	
	소 계		-	1.12		
	②독배로 확폭 (대로2-10)	- L=282(구역 내 연장) - B=30m~50m -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	20.7	20.74	사업시행자	
	소 계		20.7	20.74	-	-
	③남측도로 개설 (대로3-187)	- L=229(구역 내 연장) - B=29m~38m	2.2	2.2	사업시행자	구역 외 구간의 비용부담은 1블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정산
	소 계		2.2	2.2	-	-
합 계			22.9	24.06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032-440-45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과 (☎032-880-4487)
-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따로 붙임

II.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면 적: 75,084.3㎡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 명: (주)삼정유앤디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16. 11. 14.~2021. 6. 30.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따로 붙임

8. 인가된 관계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032-440-45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과 (☎032-880-4487)
- 열람내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10. 지형도면(변경 없음)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78호(2020.10.19.) 참고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용현학익 7블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75,084.3	-	75,084.3	100.0
주거지역	54,892.0	-	54,892.0	73.1
제3종일반주거	46,128.8	-	46,128.8	61.4
준주거	8,763.2	-	8,763.2	11.7
상업지역	14,853.3	-	14,853.3	19.8
일반상업	14,853.3	-	14,853.3	19.8
자연녹지지역	5,339.0	-	5,339.0	7.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없음)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202	16,236.5	1	197	2,389.6	3	682	7,943.4	2	323	5,903.5
대로	3	857	13,038.8	-	-	-	2	628	7,418.1	1	229	5,620.7
소로	3	345	3,197.7	1	197	2,389.6	1	54	525.3	1	94	282.8

주) 대로3개 노선, 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	30 (30~70)	주간선 도로	9,200 (282)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6	일반 도로	-	-	
변경	대로	2	10	30 (30~70)	주간선 도로	9,200 (282)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6	일반 도로	-	건고2706 66. 9. 2.	
기정	대로	2	7	30 (30~45)	보조 간선도로	9,727 (346)	광2-1	대1-20	일반 도로	-	건고45 71. 1.29	
기정	대로	3	187	29 (29~38)	보조 간선도로	1,635 (229)	대2-10	광3-5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47 (17.10.23.)	
기정	소로	1	113	11.3	국지 도로	197	대2-10	대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기정	소로	2	432	8	국지 도로	54	소1-113	학익동 587-6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기정	소로	3	712	3	보행자 전용도로	94	대3-187	소1-113	특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주) 연장의 ()는 구역 내 연장, 폭원의 ()는 변화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0	대로2-10	○ 최초결정일 표기	○ 대로2-10호선 최초결정일 표기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1,404	-	1,404	인고 제2017-247 (17.10.23.)	

2) 공간시설(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아이 그린 공원	어린이 공원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5,284	-	5,284	인고 제2017-275 (17.11.20.)	

○ 녹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연결 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2,003.5	-	2,003.5	인고 제2017-275 (17.11.20.)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6,669	-	6,669	인고 제2017-275 (17.11.20.)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어린이공원(아이그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공원 총괄 조서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구 분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5,284.0	2,434.0	1	18.7	18.7	83		
공 원 시 설	소계	2,434.0	2,434.0	1	18.7	18.7	83	
	기 반 시 설	소계	694.0	694.0	-	-	-	-
		도로	694.0	694.0	-	-	-	-
		광장	-	-	-	-	-	-
	휴양시설	316.0	316.0	-	-	-	44	
	유희시설	1,130.0	1,130.0	-	-	-	9	
	운동시설	174.0	174.0	-	-	-	5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120.0	120.0	1	18.7	18.7	2	
	관리시설	-	-	-	-	-	23	
녹지 및 기타	2,850.0	-	-	-	-	-		

* 공원 시설율

- $2,434.0 / 5,284.0 \times 100 = 46.00\%$ (법정 60%이하)

* 공원 건폐율

- $18.7 / 5,284.0 \times 100 = 0.35\%$ (법정 5%이하)

○ 시설조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	연면적 (㎡)		
합계			학익동	5,284.0	2,434.0	18.7	18.7	83	
기반시설	계			694.0	694.0	.	.	.	
	도로 (소계)			694.0	694.0	.	.	.	
	광장 (소계)			
	진입광장1			
휴양시설	계			316.0	316.0	.	.	44	
	정자목쉼터	가		316.0	316.0	.	.	.	
	휴게소1			
	휴게소2			
	휴게소3			
	파고라							8	
	평의자							34	
유희시설	계			1,130.0	1,130.0	.	.	9	
	물놀이장	나-1		779.0	779.0	.	.	7	
	숲속놀이터	나-2		351.0	351.0	.	.	2	
	어린이 놀이터1			
	어린이 놀이터2			
	유아 놀이터1			
운동시설	계			174.0	174.0	.	.	5	
	체력단련장	다		174.0	174.0	.	.	5	
	체육시설			
편익시설	계			120.0	120.0	18.7	18.7	2	
	화장실	라		120.0	120.0	18.7	18.7	.	
	편익시설			
	자전거보관대							1	
	음수장							1	
관리시설	계							23	
	안내판							4	
	가로등							16	
	CCTV							3	
기타시설	계			2,850.0	
	녹지 및 기타			2,850.0	

○ 도로조서(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계				358.0	694.0				
기정		계			358.0	694.0				
기정	소로	3	1	2.0	32.0	64.0	진입로	부지남측	소로3-6	
기정		3	2	2.0	14.0	28.0	진입로	부지서측	소로3-6	
기정		3	3	2.0	50.0	100.0	진입로	부지동측	소로3-6	
기정		3	4	1.5	44.0	66.0	연결로	정자목쉼터	소로3-6	
기정		3	5	2.0	13.0	26.0	연결로	정자목쉼터	소로3-6	
기정		3	6	2.0	189.0	378.0	연결로	소로3-3	소로3-3	
기정		3	7	1.5	16.0	32.0	연결로	소로3-3	소로3-6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총괄(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1	A	-1	39,902.5	A-1	25,946	○ 공동주택용지
A-2		-2		A-2	6,669	○ 공공문화·체육 시설 용지
A-3		-3		A-3	5,284	○ 어린이공원
-		-		-	2,003.5	○ 연결녹지 (획지계획제외)
B-1	B	-1	13,708.4	B-1	13,708.4	○ 상업용지
C-1	C	-1	5,236.9	C-1	2,164	○ 준주거 시설용지
C-2		-2		C-2	1,668.9	○ 준주거 시설용지
C-3		-3		C-3	1,404	○ 주차장용지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1	A	-1	39,902.5	A-1	25,946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C-1	C	-1	5,236.9	C-1	2,164	
C-2		-2		C-2	1,668.9	

○ 상업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B-1	B	-1	13,708.4	B-1	13,708.4	

○ 공공시설용지(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2	A	-2	39,902.5	A-2	6,669	

○ 공공시설용지(주차장)(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C-3	C	-3	5,236.9	C-3	1,404	

○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3	A	-3	39,902.5	A-3	5,28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미추홀 구 학익동 587-37 번지 일원	용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3%이하(부대복리시설 제외)		
		용적률	○ 기준: 220%이하		
			○ 허용: 250%이하		
		높 이	○ 공동주택: 40층 이하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색 채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단, 아파트주동 이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않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공동주택	주차장 지하배치	○ 주차장의 95%이상 지하 배치	10%
	건폐율	○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 시	5%
		○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 시	7%
		○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 시	10%
		※ 부대 및 복리시설은 산정대상 제외	-
①생태환경 조성계획 등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1.5%
	투수성 바닥처리	-	1.5%
	벽면녹화	-	1.5%
	비오톱 조성 (생물서식공간)	-	2%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2%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1.5%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설치 이용 시	-	시설별 2%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 시	-	2%이내
②에너지 절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 용적률의 5% 이내
③공공시설 (공익기여)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①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 이내임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 지 일원	허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불 허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추가 불허 건축물 - 주거복합건축물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15층이하	
		배치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	
		형태	○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 저층부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을 구성 ○ 차양시설은 건물 내 설치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을 갖도록 형성 ○ 옥상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은 차폐 및 옥상녹화 유도 ○ 보행안전을 위한 저층부 야간조명 권장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1	미추홀구 학익동 587-37번 지 일원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8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 및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시설배치 유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벽면선을 통일시켜 연속적인 보행공간 창출 ○ 건축물 옥상부분은 옥상녹화 및 옥상공원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113호선 변으로부터 1.0m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소로1-113호선 전면공지는 보도조성 		

○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2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 지 일원	용 도	허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3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 전용건축물 포함)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어린이공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3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공원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원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공동주택 용지	대지내 공 지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1	상업용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부가차로 계획	○ 독배로 교통 연속류 확보 및 소로1-113의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진출입을 위한 부가차로 (1개차로:3m)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진입차량과 기타 차량을 분리토록 하며 주변 교통망과 연계된 유기적인 교통계획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부문별 계획: ③교통처리계획 중 부가차로운영계획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준주거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2	공공·문화 체육시설	대지내 공 지	-	
A-3	어린이 공원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C-3	주차장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9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사업주체: (주)대우건설 대표자 김 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씨밋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06-1번지(영종 A9BL)
 - 나. 대지면적: 44,444.34㎡ (공부상면적: 44,568.1㎡, 기부채납: 123.76㎡)
 - 다. 연 면 적: 125,195.2542㎡
 -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10개동, 847세대
(69형-546세대, 79형-47세대, 84형-254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7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하1~지상2층, 4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1. 12. ~ 2024. 05.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60호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의견을 함께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위 차: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신흥동3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 가. 구역명: 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면 적: 3,574,458㎡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부분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용도지구 :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 : 변경 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 54개 가구 및 78개 획지 결정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등
다.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②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회원가입 후 의견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③ 열람장소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정보통신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④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01호

도시계획시설(사모지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안)

도시계획시설(사모지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연수구청(공원녹지과 ☎032-749-872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5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 2) 명 칭 : 사모지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변경)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공원면적(m ²)		인가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	사모지공원	도시 공원	62,760	62,936.2	62,760	62,936.2	1944.01.08. (고시 1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변경)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 계				81,966.5	62,760.0			62,936.2	62,936.2							
1	연수동	438	전	1,511.0	1,511.0	438	전	1,511.0	1,511.0	유○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	1/1				
2	연수동	438-1	전	4,876.0	4,725.0	438-5	전	4,565.0	4,565.0	송○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1/1	○농업협동 조합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지상권	
3	연수동	438-2	도로	552.0	552.0	438-2	도로	552.0	552.0	국방부		1/1				
4	연수동	438-3	전	965.0	965.0	438-3	전	965.0	965.0	이○희	인천 연수구 청학동 ○	1/1				
5	연수동	438-4	전	1,322.0	1,322.0	438-4	전	1,322.0	1,322.0	조○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1206.6/1322				
										최○혁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	99.17/3966				
										최○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	99.17/3966				
										최○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	99.17/3966				
										유○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	16.23/1322				
6	연수동	463	도로	140.0	140.0	463	도로	140.0	140.0	건설교통부		1/1				
7	연수동	471	집중지	2,096.6	1,783.0	471-29	집중지	1,784.8	1,784.8	인천광역시		1/1				
8	연수동	471-13	도로	265.8	265.8	471-13	도로	265.8	265.8	인천광역시 연수구		1/1				
9	연수동	471-14	집중지	6,431.1	1,196.2	471-30	집중지	1,195.6	1,195.6	인천광역시		1/1				
10	연수동	산56-4	임야	9,917.0	1,682.0	산56-11	임야	2,103.0	2,103.0	홍○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	1/1				
11	연수동	산56-5	임야	3,768.0	3,768.0	산56-5	임야	3,768.0	3,768.0	윤○학	경기 김포군 양촌면 ○	1/1				
12	연수동	산56-6	도로	99.0	99.0	산56-6	도로	99.0	99.0	국방부		1/1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3	청학동	217-69	도로	890.0	890.0	217-69	도로	890.0	890.0	인천광역시		1/1				
14	청학동	217-70	도로	191.0	191.0	217-70	도로	191.0	191.0	인천광역시		1/1				
15	청학동	217-71	도로	512.0	150.0	217-82	도로	123.0	123.0	인천광역시		1/1				
16	청학동	219-1	도로	413.0	413.0	219-1	도로	413.0	413.0	건설교통부		1/1				
17	청학동	219-2	도로	168.0	168.0	219-2	도로	168.0	168.0	건설교통부		1/1				
18	청학동	220	도로	96.0	96.0	220	도로	96.0	96.0	인천광역시		1/1				
19	청학동	220-1	전	304.0	304.0	220-1	전	304.0	304.0	최○식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	1/1				
20	청학동	221-1	도로	1,512.0	1,512.0	221-1	도로	1,512.0	1,512.0	인천광역시		1/1				
21	청학동	221-6	전	63.0	63.0	221-6	전	63.0	63.0	인천광역시		1/1				
22	청학동	277-4	답	418.0	418.0	277-4	답	418.0	418.0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대로 ○	1/1	이○현	경북 포항시 남구 자곡동 ○	근저당권	
23	청학동	278	전	1,601.0	1,601.0	278	전	1,601.0	1,601.0	정○자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	3/11				
										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2/11				
										이○진	충청남도 서산시 안지면 ○	2/11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2/11				
										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	2/11				
24	청학동	278-2	전	106.0	106.0	278-2	전	106.0	106.0	인천광역시		1/1				
25	청학동	279	전	2,545.0	2,545.0	279	전	2,545.0	2,545.0	학교법인 ○학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1/1				
26	청학동	279-1	전	1,256.0	1,256.0	279-1	전	1,256.0	1,256.0	김○희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	1/1	○농업협동 조합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27	청학동	280	전	2,727.0	2,727.0	280	전	2,727.0	2,727.0	학교법인 ○학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1/1				
28	청학동	436-2	도로	12.0	12.0	436-2	도로	12.0	12.0	건설교통부		1/1				
29	청학동	436-3	도로	4.0	4.0	436-3	도로	4.0	4.0	건설교통부		1/1				
30	청학동	437	도로	126.0	126.0	437	도로	126.0	126.0	건설교통부		1/1				
31	청학동	산4-15	임야	198.0	198.0	산4-15	임야	198.0	198.0	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32	청학동	산4-18	임야	198.0	198.0	산4-18	임야	198.0	198.0	김○윤	중구 경동 ○	1/1				
33	청학동	산4-20	임야	198.0	198.0	산4-20	임야	198.0	198.0	유○임	인천시 중구 내동 ○	1/1				
34	청학동	산4-21	임야	198.0	198.0	산4-21	임야	198.0	198.0	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35	청학동	산4-22	임야	198.0	198.0	산4-22	임야	198.0	198.0	한○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1/1				
36	청학동	산4-23	임야	198.0	198.0	산4-23	임야	198.0	198.0	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37	청학동	산5-4	임야	6,450.0	2,636.0	산5-56	임야	2,607.0	2,607.0	유○모	연수구 청학동 ○	1/1				
38	청학동	산5-16	도로	992.0	992.0	산5-16	도로	992.0	992.0	국방부		1/1				
39	청학동	산5-17	임야	298.0	298.0	산5-17	임야	298.0	298.0	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40	청학동	산5-19	임야	1,190.0	1,190.0	산5-19	임야	1,190.0	1,190.0	이○락	인천시 남구 옥련동 ○	1/3				
										이○호	인천시 남구 옥련동 ○	1/3				
										이○호	연수구 연수구 원인재로 ○	1/3				
41	청학동	산5-20	임야	298.0	298.0	산5-20	임야	298.0	298.0	최○규	인천시 남구 학익동 ○	1/1				
42	청학동	산5-21	임야	992.0	992.0	산5-21	임야	992.0	992.0	박○석	인천 남구 주안동 ○	1/1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43	청학동	산5-22	임야	1,686.0	1,686.0	산5-22	임야	1,686.0	1,686.0	박○석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	1/1				
44	청학동	산5-23	임야	694.0	694.0	산5-23	임야	694.0	694.0	길○수	인천시 남구 송의동 ○	1/1				
45	청학동	산5-24	임야	397.0	397.0	산5-24	임야	397.0	397.0	홍○표	연수구 옥련동 ○	1/1	○세무서		압류	
													○세무서		압류	
46	청학동	산5-25	임야	2,978.0	2,978.0	산5-25	임야	2,978.0	2,978.0	박○석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	1/1				
47	청학동	산5-27	임야	448.0	448.0	산5-27	임야	448.0	448.0	김○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1/1				
48	청학동	산5-28	임야	1,555.0	1,555.0	산5-28	임야	1,555.0	1,555.0	김 ○	서울 용산구 이촌로 ○	1/2				
										김○연	서울 용산구 이촌로 ○	1/2				
49	청학동	산5-36	도로	1,825.0	729.0	산5-57	도로	699.0	699.0	인천광역시		1/1				
50	청학동	산5-46	도로	1,170.0	1,170.0	산5-46	도로	1,170.0	1,170.0	건설교통부		1/1				
51	청학동	산5-50	도로	506.0	506.0	산5-50	도로	506.0	506.0	국방부		1/1				
52	청학동	산5-51	임야	29.0	29.0	산5-51	임야	29.0	29.0	유○모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	1/1				
53	청학동	산5-52	임야	98.0	98.0	산5-52	임야	98.0	98.0	인천광역시		1/1				
54	청학동	산5-54	임야	655.0	655.0	산5-54	임야	655.0	655.0	박○희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1/1				
55	청학동	산6	임야	1,091.0	1,091.0	산6	임야	1,091.0	1,091.0	산림청		1/1				
56	청학동	산7-1	도로	198.0	198.0	산7-1	도로	198.0	198.0	최○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1/1				
57	청학동	산7-3	임야	1,983.0	1,983.0	산7-3	임야	1,983.0	1,983.0	최○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1/1				
58	청학동	산7-4	임야	1,091.0	1,091.0	산7-4	임야	1,091.0	1,091.0	서○석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1/1	-		-	
59	청학동	산7-5	임야	99.0	99.0	산7-5	임야	99.0	99.0	최○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1/1				
60	청학동	산7-6	임야	694.0	694.0	산7-6	임야	694.0	694.0	한○일	인천시 남구 송의동 ○	1/1				

일련 번호	소 재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61	청학동	산7-7	임야	496.0	496.0	산7-7	임야	496.0	496.0	윤○섭	인천시 남구 옥련동 ○	1/2				
										윤○로	연수구 옥련동 ○	1/2				
62	청학동	산8	임야	5,175.0	5,175.0	산8	임야	5,175.0	5,175.0	권○우	서울 양천구 목동 ○	1/1				
63	청학동	산8-2	임야	1,196.0	1,196.0	산8-2	임야	1,196.0	1,196.0	인천광역시		1/1				
64	청학동	산8-3	임야	863.0	863.0	산8-3	임야	863.0	863.0	인천광역시		1/1				
65	청학동	산11	임야	744.0	744.0	산11	임야	744.0	744.0	산림청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40호

유료도로 신설 공사에 관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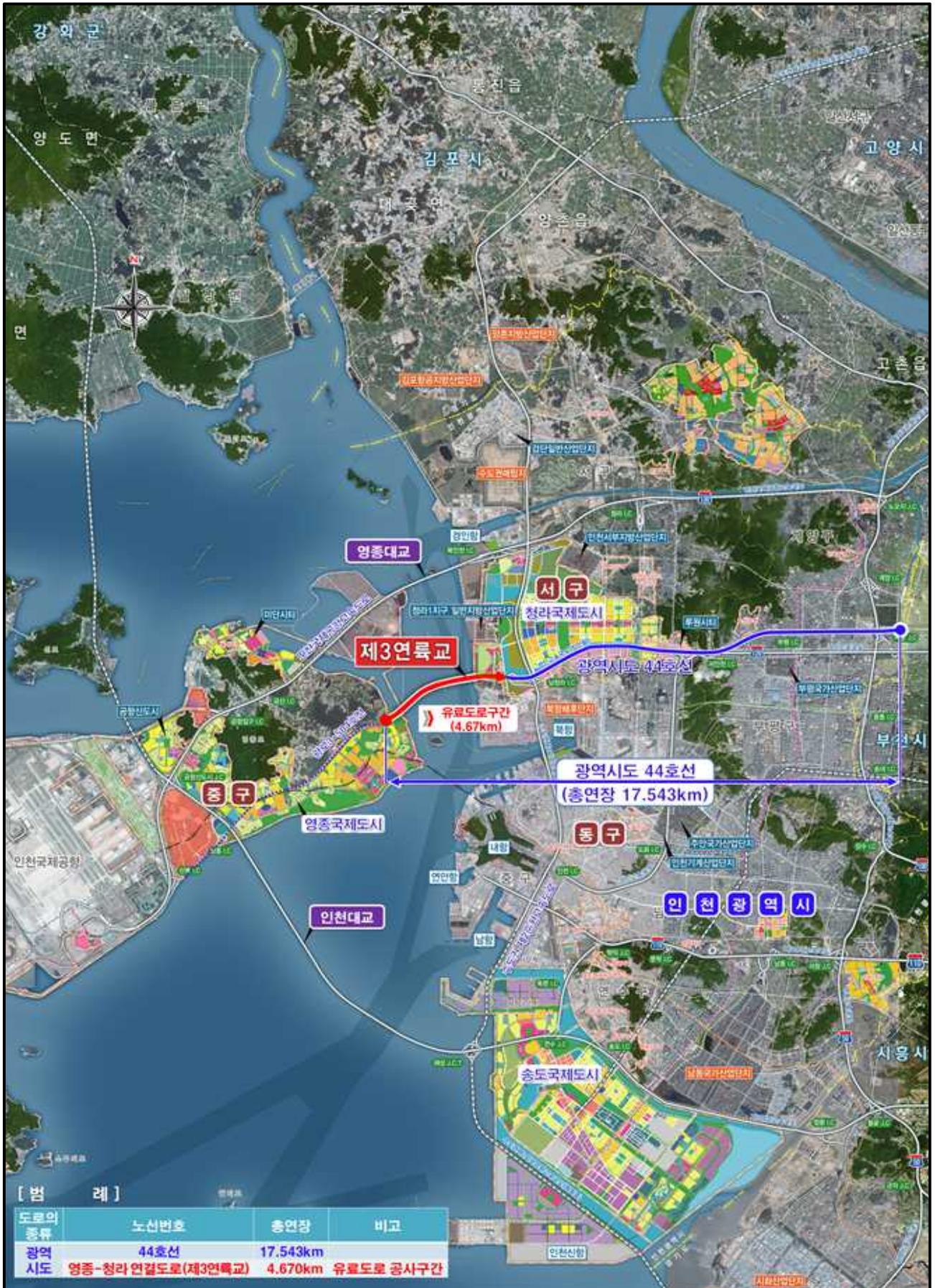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

①도 로 의 종 류	광역시도	② 노 선 명	44호선
③공 사 구 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 서구 청라동 (광역시도 44호선 연장 17.543km중 4.67km)		
④공 사 종 류	광역시도 건설(연장 4.67km, 왕복 6차로+자전거도로·보도)		
⑤공 사 개 시 일	2021. 10.	⑥착공예정일	2021. 10.
⑦주 요 경 과 지	-		
⑧공 사 시 행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청라국제도시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인천공항 교통수요 증가 대응과 수도권 중·서부 지역의 교류 강화 및 공항 접근성 개선 		

첨부서류: 1. 지형도 1부.
2. 노선도 1부.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4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주요내용

- 위 치: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 결정내용: 미지정 → 보전관리지역(11,974.0㎡)

2. 열람(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32-440-4614)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808)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032-930-4326)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6. 4.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칭	변경 사항			변경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9-0- 인천광역시-45호	인천 자바르떼	대표자	이경옥	이찬영	2021.6.3.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40번길5-4, 4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40, 2층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2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을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명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인천광역시 문화재 등록

1) 대상문화재

번호	명칭	구조	수량/면적/규모	시기	소유자 및 소재지
1	송학동 옛 시장관사	목조+벽돌조	건축면적 : 273.2㎡ (1층)	1966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74
2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수목	수고 30.5m 둘레 4.7m	1884년 추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 11-1 자유공원 내
3	수인선 협궤 객차 (18028호)	객차	길이14.8× 폭2.2× 높이3m	1969년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26 인천시립박물관 우현마당
4	협궤 증기기관차 (허기-7형)	증기 기관차	길이14.6× 폭2.3× 높이3.2m	1952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소래역사관 광장

2) 등록 예고 사유

○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송학동 옛 시장관사’는 1901년 지어진 ‘코노 다케노스케’ 별장 터의 정원 및 대문의 모습이 남아 있으며, 광복 후 동양장(서구식 레스토랑), 송학장(사교클럽)으로 쓰였다. 1965년 인천시에서 매입하여 기존 사교클럽을 철거하고 현존하는 건축물을 신축, 1966년 14대 김해두 인천시장부터 최기선 민선초대 시장까지 17명이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한 건물이다. 근대 개항기 고급 일본식 가옥, 서구식 레스토랑, 사교클럽, 시장관사, 시사편찬위원회로 이어지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추었고 개량된 전통건축양식과 일본건축양식이 혼합된 근대주택의 형태로서 보존실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 가치가 충분함

○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구 자유공원 일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의 조계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이 조성되면서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령 측정 결과 130년 이상(1884년 생 추정)되어, 인천광역시 보호수로 지정(2015.6.29.) 관리하고 있음.

플라타너스는 주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시야 확보를 위한 전지작업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유공원 플라타너스’는 인천 개항기 역사를 간직하고 인천상륙작전의 포화 속에서도 현재까지 버티오며 근현대사의 역사를 지켜온 산 증인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공원에 식재되어 높이 30.5m, 둘레 4.7m에 이르는 고유의 원형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시 등록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수인선 협궤 객차(18028호)

-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7년 7월 11일 개통, 199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수인선 폐선 이후 대부분 폐차되어 전국에 단지 5량만 남아 있는데,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중인 협궤 객차(18028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공장인 인천공작장에서 1969년 제작되어 수인선에서 운행되다가, 1995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개인이 객차3량을 구입 소장하여 보관할 당시 철도차량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을 2018

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1량을 인수받아 적합한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협궤객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한 것으로서 객차 내부 벽면에 “1969 인천공작창”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 제작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현재 원형 그대로 모습을 갖춘 협궤객차는 철도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2량 이외에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18028호가 유일하므로 매우 희소한 가치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수원과 인천 사이에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오지 등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서민들의 발이 되고 주민들의 애환을 함께한 수인선 협궤 객차는 인천의 근현대 지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시등록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음.

○ 협궤 증기기관차(혀기-7형)

- 소래역사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궤 증기기관차 ‘혀기-7형’은 1927년 6월 14일(현재분 1952년)에 수원 기관차사무소에서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협궤용 증기기관차로 1978년까지 수인선 등에 운행되었음. 그 후 1983년 쌍용그룹에서 한국도로공사로 기증하여 대관령 휴게소에 전시되었다가, 2001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문화근린공원 설치되었고, 2008년 현재 소래역사관 광장 앞에 이전 보수정비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협궤 증기기관차는 수인선·수여선 운행 중단 이후 대부분 폐차되었고, 현재 국내에 6량만 현존하고 있는데 철도박물관에 보존(국가등록문화재)하고 있는 증기기관차와 같이 혀기-7형도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적으로도 문화재로 보호할 희귀성이 있고, 현재 실제 운행되었던 소래역과 소래철교 인근에 전시되고 있어 소래포구만의 독특하고 지역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수원과 인천 사이에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오지 등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서민들의 발이 되고 주민들의 애환을 함께한 수인선 협궤 증기기관차는 인천의 근현대 지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시 등록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음.

3. 등록 예고일 : 시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시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 담당주무관 이메일(yoosd99@korea.kr)로 제출

다. 연 락 처

- 전 화 : (032)440-4032
- 팩 스 : (032)440-8693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9층 문화유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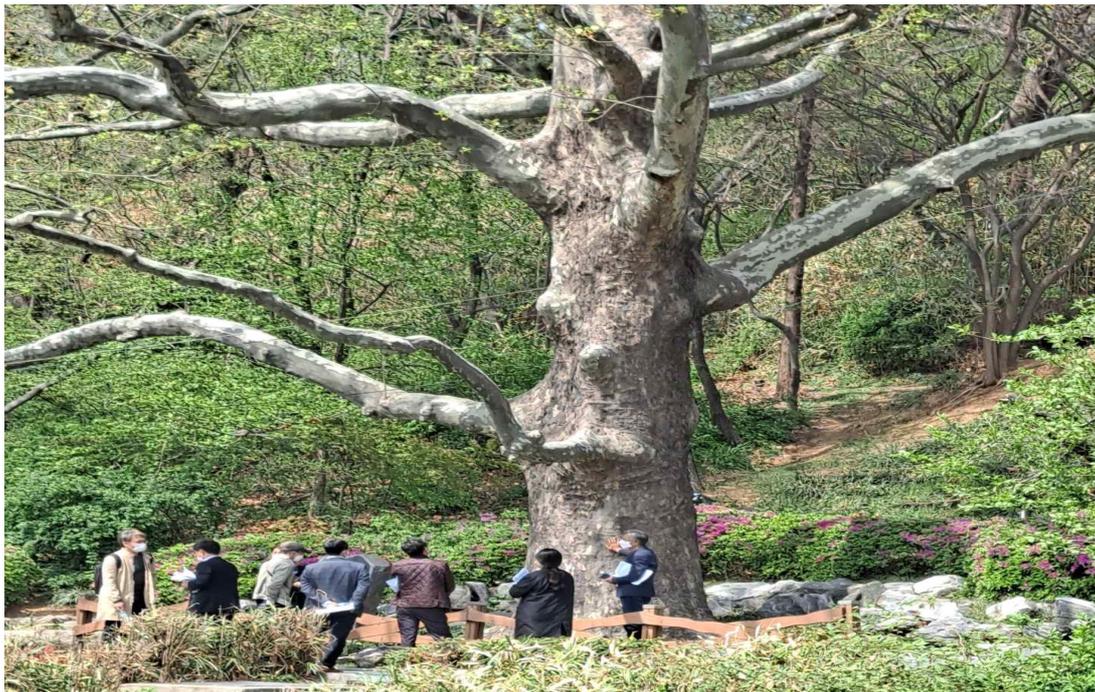
<붙임> 등록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등록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 수인선 협궤객차 (18028호)



□ 협궤 증기기관차 (허기-7형)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열람합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시 동구 송림로 82-1일원 (39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송림지하도로	지하도로	동구 송림동 39번지 일원	3,187.9	87.08.18. (인고 제1987-1191호)	
변경	송림지하도로	지하도로	동구 송림동 39번지 일원	3,232.8	-	경미한 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하도로	지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 면적 변경 -기정 : 3,187.9㎡ -변경 : 3,2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뜨레길 조성사업의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변경 (경미한 변경)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 명칭 :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프레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232.8㎡(지하도로)
- 사업규모

(단위 : m²)

시설명	시설의 종류	용도	면적	비고
송림지하도로	지하도로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573.59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174.84	
		기타(통로 및 계단실 등)	2,484.37	
합계			3,232.8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2021. 6. 7. ~ 2021. 6. 22.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동구청 도시전략실(☎032-770-6666),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용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1	송림동	39	도	61,603.3	3,222.9	인천광역시					
2	송림동	60-82	도	77.7	9.9	인천광역시					

■ 지장물 조서

○ 지상지장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m)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송림동	39도	안내판	스테인레스 (3.0m×2.0m)	바닥 (4.0×1.2)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1
2	송림동	39도	회향목	-	150주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2
3	송림동	39도	보도블럭	-	71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3
4	송림동	39도	아스팔트포장 깨기	-	47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사진1. 동구 안내판(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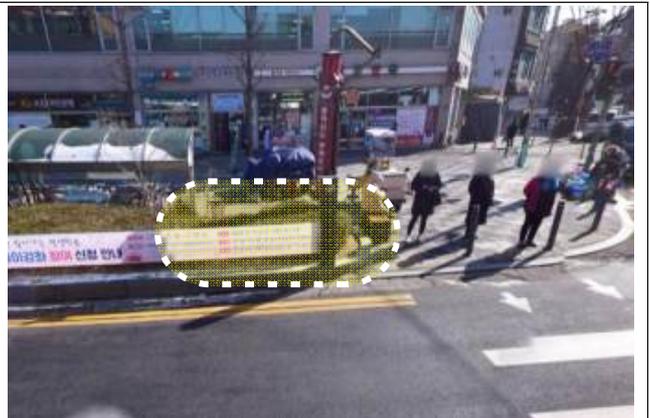


사진2. 화단(회향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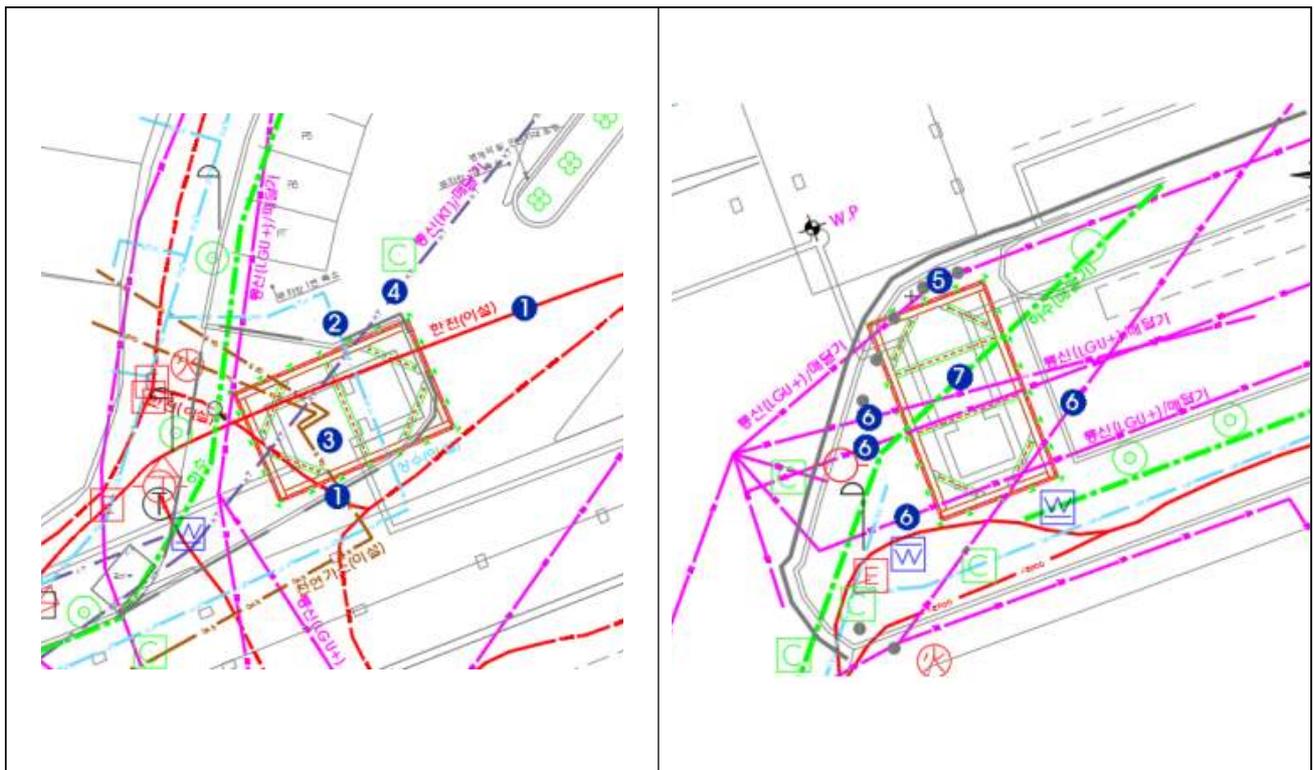
사진3. 보도블럭 철거



사진4. 아스팔트포장 깨기

○ 지하지장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연장 (m)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송림동	39도	한전	Ø 100	30m	한전제물포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87번길 27	이설
2	송림동	39도	상수도	Ø 300mm	20m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이설
3	송림동	39도	삼천리	Ø 60, 90mm	20m	삼천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27	이설
4	송림동	39도	KT	Ø 100X8	15m	KT	인천광역시 중구 체물량로 189	매달기
5	송림동	39도	LGU+	Ø 100×2	10m	LGU+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68	매달기
6	송림동	60-82도	LGU+	Ø 100×2 Ø 100×3	25m	LGU+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68	매달기
7	송림동	60-82도	하수도	Ø 600mm	4m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매달기
				이 하	여 백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70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노조 간 체결된 <2020년도 임금 협약>의 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9에 규정된 봉급지급 기준표 및 동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별표17 등을 개정하여 시립예술단원의 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2021.2.23. 공포)에 따른 동 규칙과의 연관 조항에 일부 변경이 있어 이를 조정함.(안 제8조제1항, 안 제28조제4항제3호)
- 2020년 12월 7일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의 봉급액을 2.5% 인상함.(별표 9, 별표 10)
- 위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 인상함.(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6.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2) 연락처 : 032-420-2743(전화), 032-440-8872(팩스)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1항 중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의 겸직 승인된 단원은 제외한다.”를 “다만, 조례 제14조제1항의 겸직 승인된 단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 제4항 제3호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를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9·별표 10·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봉급 및 수당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9]

보급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1	1,329,000
2	1,329,000
3	1,397,000
4	1,514,000
5	1,631,000
6	1,748,000
7	1,851,000
8	1,924,000
9	2,015,000
10	2,093,000
11	2,171,000
12	2,226,000
13	2,279,000
14	2,322,000
15	2,367,000
16	2,411,000
17	2,454,000

호 봉	금 액
18	2,495,000
19	2,540,000
20	2,579,000
21	2,620,000
22	2,651,000
23	2,683,000
24	2,712,000
25	2,749,000
26	2,769,000
27	2,798,000
28	2,820,000
29	2,851,000
30	2,878,000
31	2,902,000
32	2,924,000
33	2,941,000
34	2,960,000

[별표 10]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1	1,179,000
2	1,179,000
3	1,240,000
4	1,344,000
5	1,448,000
6	1,552,000
7	1,643,000
8	1,708,000
9	1,789,000
10	1,858,000
11	1,927,000
12	1,976,000
13	2,023,000
14	2,061,000
15	2,101,000
16	2,140,000
17	2,178,000

호 봉	금 액
18	2,215,000
19	2,255,000
20	2,289,000
21	2,326,000
22	2,353,000
23	2,382,000
24	2,407,000
25	2,440,000
26	2,458,000
27	2,484,000
28	2,503,000
29	2,531,000
30	2,555,000
31	2,576,000
32	2,596,000
33	2,611,000
34	2,627,000

[별표 17]

정액급식비 등 지급 기준표(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등 급	월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3~7 등급 상임단원	140,000	
가계보조비	3~7 등급 상임단원	120,000	
교통보조비	3~7 등급 상임단원	120,000	

규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봉급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의 겸직 승인된 단원은 제외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8조(국외유학 및 연수) ①~④(생략)</p> <p>1. ~ 2. (생략)</p> <p>3.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p>	<p>제8조(봉급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조례 제14조제1항의 겸직 승인된 단원은 제외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국외유학 및 연수) ① ~ ④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p>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조)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규정 (안 제4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안 제8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9조)
-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6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군수·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을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u>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u> ----- ----- ----- -----.</p>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u>군수·구청장,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u> ----- ----- ----- -----.</p>
<p>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u>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신 설></u></p>	<p>제8조(지원사업)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u></p> <p>9. <u>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u></p>

<신 설>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 운영) ①·② (생략)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신 설>

<신 설>

④·⑤ (생략)

<신 설>

제11조 ~ 제13조 (생략)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
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
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
터 제13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제4조(정의) ○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25조(비용의 보조)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0조(기금의 용도)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3. 23.>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은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안 제9조)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제1호),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제2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제3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제4호) 보건·의료 서비스(제5호),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제6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각 부서의 개별법령 또는 조례 근거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 안 제8조의 실태조사 및 안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실태조사 50백만원)
- * 각 부서에서 안 제9조의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사업 발굴을 통한 추진 사업으로 현재 추계 불가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 정 남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제6조)
-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제8조)
-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9조)
-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 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의료 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p>관계 법령</p>	<p><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복지 지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신설 2021.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p><input type="checkbox"/> 건강가정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8조(혼인과 출산)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p>관련 법규 정비 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p>특이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없음”</p>

관계법령 발췌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3. 23.>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은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안 제9조)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제1호),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제2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제3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제4호) 보건·의료 서비스(제5호),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제6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각 부서의 개별법령 또는 조례 근거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 안 제8조의 실태조사 및 안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실태조사 50백만원)
- * 각 부서에서 안 제9조의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사업 발굴을 통한 추진 사업으로 현재 추계 불가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 정 남